

이러한 적용범위의 문제와 아울러 또한 실업급여의 조건이 엄격한 문제를 들 수 있다. 이는 근로동기를 약화시키면 안된다는 '생산적 복지'의 강박관념에서 비롯하는 것으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박탈하고 이러한 판단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판단하게 되어 있어 자발적 실업의 외피를 띠고 자행되는 강요된 해고를 당한 노동자의 경우는 수급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급여기간에 있어 특별연장급여제도의 마련이나 최저지급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것들도 기실 실업의 장기화추세에 있어서는 유명무실할 수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의 실업부조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 많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노동시장정책적 성격을 사회보험 강화로 온전히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

- 국민연금에 대하여

99년 들어 세상을 떠들썩 하게 한 국민연금의 문제는 도시자영업자에게로의 확대를 통하여 전국민을 통합하는 범위에서 그야말로 '국민'연금으로서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접근할 수 있다. 기존 군인연금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등 분화되어 있는 상화에서 95년의 농어민 연금 확대에 이은 이와 같은 시도는 연금제도로서 보편화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투명하게 인식되지는 못하고 있다. 연금제도 자체가 특수직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의 충성을 전제로 실시된 부분과 또한 자금동원의 하나로 저부담 고급여의 논리로 시작된 부분에 대해 기본적 사실과 또한 기간의 전개과정에서 실제 기금운용으로 인한 대중적 불신⁵⁸⁾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과약에 대한 문제, 자발적 신고과정에서 소득이 실제보다 낮게 신고 되는 문제, 그로 인하여 봉급생활자(노동자에 다름아닌)들 보다 적은 기여를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가 소득재분배에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논리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연금의 대상확대의 문제는 단지 그 뿐만은 아니다. 기존의 전개과정에서 보여졌던 바와 마찬가지로 시대적 상황을 통해 볼 때, 재정상의 불신을 딛고 전국민 보편연금의 시행이라는 속에서의 이데올로기적 효과와 추가적으로 모이는 기금에 대한 운용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가입자가 실제 수급을 하게 되는 것은 2010년 이후의 문제가 되기에 저부담 고급여의 문제는 일단 미뤄지는 것이고 당장의 기금을 모아 활용하는 것이 현재적 과제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4-2/ 공적 부조(생활보호제도를 중심으로)

- 범주적 제한적 의미에서의 생활보호제도의 문제..

57) 노동연구원의 98년 초, 건설일용직 노동자 60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실업급여를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0.5%에 불과하였다. - 주은선, "김대중 정권의 사회복지 정책", 노동전선 98.3

58) 2000년 재정고갈 설과 공공자금관리기금법(94년 시행)에 의한 기금운용의 문제 등

소득이 생계를 위한 필요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직접대상으로 하여 소득을 보조해주는 제도인 생활보호제도는 소득제한과 인구학적 제한, 부양의무자 요건으로 인하여 범주적/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즉 부양할 자식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 18세 미만 고아, 장애가 극심한 사람 등의 거택보호대상자들의 대상으로 월 13만원의 지원이 되는 것이다. 물론 생계보호 2종으로 분류되는 자활보호대상자⁵⁹⁾가 있어 별도의 지원책이 존재하지만, 노동능력의 여부를 중시여기고 자산소득기준을 엄격히 하는 문제는 '잔여적'제도⁶⁰⁾물론 로서의 생활보호제도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생활보호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여가 전제되는 사회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해 최저생계를 보장해주고자 하는 의의에서이며, 함에도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의 경우 사회보호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게 되는 문제를 낳는다. 따라서 노동과 복지를 연계시키는 선에서의 근로능력의 유무와 인구학적 규제조건을 전제로 하여 그야말로 최소한의 국가역할만을 담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제한된 범위를 철폐하고 생활보호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한 방안일 수 있다. 실업부조를 신설하는 문제와 생활보호를 개혁하는 문제는 연동되어 고민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극심한 경제악화속에서 대량실업 등의 사회문제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의 임시방편적인 '한시적 생계보호'의 확대 문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근본적 접근은 아니다. 현재 제기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주장도 이러한 문제를 기저에 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5/ 소결

- 본 글의 한계와 함에도 불구하고 밝히고자 한 바

자유화, 개방화가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것과 동시에 추진되는 전 사회적 구조조정 속에서 공공성의 파괴와 민주주의의 후퇴 부분을 권리의 위축이라는 것을 통하여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논리적 일관성이 실제 글의 서술과정에서는 크게 두각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복지 예산 삭감, 교육재정 삭감, 보건 의료 지원 삭감, 개별 부채의 증가, 방위비 지속적 증가를 아우르는 속에서의 조세문제를 통하여, 4대사회보험과 공적 부조제도로서의 생활보호제도를 통해 본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속에서의 사회적 안전망에 대하여 애초 밝히고자 한 바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함에도 밝히고자 하는 바는 어떠한 상황적 요인을 들이댄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고통받고 위기극복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노동자 민중에 다름아니라는 것과 그것들

59) 1998년 거택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은 월소득 22만원 이하, 세대당 2,800만원 이하의 재산액이며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월소득 23만원 이하, 세대당 2,900만원 이하의 재산액이다.

60) 사회복지계의 거두인 월렌스키와 르보는 사회복지를 정의함에 있어 국가가 시장에서의 최저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잔여적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임으로서의 접근이 강조되는 제도적 복지로 나누고 있다.

을 향후 극복해 나가는 단초는 역시나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문제의 직시가 될 것이다.

.....

자본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대안적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초국적금융자본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이창근(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

1. 세계화의 재앙들... 그리고 국제적 통제의 필요성

자본의 세계화는 '시장의 자유'를 공리로 내세우며, 전 세계에 "자유화, 개방화, 탈규제"라는 거역할 수 없는 지상명령을 부과했다. 그것의 결과는 참혹하기만 하다. 고용파괴, 부의 집중과 빈곤의 확대, 공공영역의 파괴와 사회적 배제의 심화, 문화적 자율성의 파괴, 생태계의 파괴. 그동안 한계적이거나 민족국가가 보유하고 있었던 국민경제적 조절수단은 세계화 시대에 거의 박탈당하고 말았다. 각국 민중들은 자신들의 운명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뿐이다.

각국의 정부들이 하는 유일한 일이란, 자신들의 영토 내부로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내부에 자본을 보유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성이 강화되면 될 수록, 국가들 사이의 경쟁은 점점 더 격화된다. 모든 민족국가들은 그들 자신을 자본에게 매력적으로 만들 새로운 방식을 찾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며, 더구나 그 투자의 대부분이 단기로 투자된다는 사실 자체는 "국가들이 자본을 자신의 영토내에 보유할 조건을 유지하라는 항상적인 압력하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은 '유연화'되며, 민간 투자자에 닫혀 있었던 알짜배기 공기업들도 그들에게 내놓아야 한다. 투자 이윤을 모국으로 보내는 것에도 어떠한 제한을 가해서는 안된다. 결국 남는 것은 앙상한 "경제회복을 나타내는 지표와 외국인직접투자의 폭발적 증가를 자축하는 통계수치"들 뿐이다.

'밑바닥을 향한 무한 경쟁'을 어디에서 끊어 낼 것인가? 끊어내기 위해 민중들에게 필요한 수단들은 무엇인가? 이미 전세계적인 수준에서 작동하고 있는 강제적 무한경쟁체제를 끊어내는데 있어, 일국을 넘어선 수단들은 과연 존재하는가?

'자본의 국제적 통제'는 상당히 넓은 의미를 포함한다. 전세계 민중들에게 '밑바닥을 향한 무한 경쟁'으로 내모는 세계적인 탈규제 시스템의 작동을 제한하는 모든 수단들이 포함된다. 일국적인 수준, 지역적인 수준, 국제적인 차원 모두에서 제국주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모든 행위와 수단들-민주노총의 정리해고반대 투쟁, 멕시코 한영노동자들의 민주노조 건설투쟁, 생태전사들의 핵발전소 반대투쟁, 금융거래에 대한 과세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필자는 현 세계화의 핵심적인 특징중의 하나인 '초국적금융자본, 해외직접투자의 통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검토하고, 한국 민중들에게 주는 시사점을 밝혀보도록 한다.

2. '97-'99 무슨 일들이 일어났는가?

* 97년 태국의 바트화 폭락으로부터 발발한 동아시아 금융/외환위기는 인도네시아, 한국으로까지 퍼졌고, 급기야 러시아, 브라질로까지 급속히 전염되었다. '시장 자유'를 흠집내는 어떠한 행위도 터부시하던 자본가들 및 그들 하수인격인 지식인집단들은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다. 세계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헤지 펀드, '양떼 본능' 등의 단어들을 써가면서, 단기성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노벨경제학상까지 수상한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모여 만든 대표적 헤지펀드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의 파산은 금융자본의 왕국인 미국에서조차 헤지펀드에 대한 규제 필요성들이 언급되었다. 그들사이에서 단기성 투기자본 규제를 위한 핵심적인 제안은 크게 세가지로 나타났다. 1) 헤지펀드의 무차별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국제금융흐름 투명성제고, 감독강화 활동 2) 자본의 유동성 위기를 막아낼 '최후의 의지처(수단)로서 국제적대부자의 역할 강화 3) 국제금융질서 개편 논의. 어쩌면 그들 사이에서도 비록 단기성 투기자본에 불과하지만,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일정하게 동의되고 있는 듯 하다. 자본가들의 이러한 반응은 금융적 투기적 축적체제와 그로 인한 세계 금융질서의 불안정성에 대해 그들 스스로도 두려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다자간투자협정'(MAI)를 둘러싼 세계 시민·민중들의 투쟁이다. MAI는 95년부터 OECD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98년에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97년 1월 MAI협상 초안이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면서, 전세계 시민·노동·사회운동세력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일으켰으며, 급기야 98년 10월 프랑스의 탈퇴로 말미암아 '협상' 자체가 중단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MAI를 둘러싼 '계급적 의미'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MAI는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의 상을 너무도 분명히 나타내주었으며, 또한 세계 민중·노동운동에게는 자본가들의 국제협정에 맞선 투쟁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제시해주었기 때문이다. MAI를 여타의 자유무역협정·투자자유화협정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현시기 제국주의 국가 및 초국적자본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화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 우선 MAI는 '투자'의 범위를 대단히 넓게 정의⁶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단기성 투기'조차도 '투자'로 인식되어, 보호의 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투자자유화 및 투자보호 조항들이 대단히 강화되었다. 대부분의 투자보장협정이 투자후단계(post-establishment)만을 보호대상으로 인정함에 비해, MAI는 투자실행단계(pre-establishment)까지도 자유화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투자자가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한국의 주식, 채권, 외환시장에 투기하는 것조차 '정당한 투자'이며, 따라서 충분히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대부분의 양자간투자협정 및 OECD규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투자자유화의무⁶²⁾

61) 투자를 유형,무형의 모든 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62) 핵심인력의 이동 보장, 민영화시 외국투자자의 참여 보장,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이행의무 부과 금지, 외국투자자 및 그 투자에 대한 독점기업의 차별금지 의무 등

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단히 구속적인 분쟁해결절차를 명시하여 각종 투자자유화 및 보호 의무에 대한 각국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절차 역시 투자실행 단계에까지 적용된다. 또한 국가간 분쟁해결 절차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직접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다. 한마디로 MAI는 '초국적자본을 위한 권리헌장'에 다름아니었다.

3. 세계적 금융위기 논쟁, MAI에 대한 투쟁 그리고 계급적 의미

3-1. 제국주의 국가들 및 초국적금융자본의 '위기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허구성

'시장의 자유'를 극단으로까지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시장의 규제와 통제'를 말하고 있는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자본의 일견 모순적으로까지 보이는 행동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MAI는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자본이 금융적·투기적 축적 활동을 지구적으로 확장시키고, 합법적인 정당성을 부여받으려는 노력이었다. 그럼에도 자본가들은 금융적·투기적 축적 활동이 자신들의 궁극적인 기반인 생산활동 자체를 침해하고,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동아시아 위기 이후 독일, 일본이 단기성 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⁶³⁾을 조금 일찍 부터 외쳤던 반면, 미국은 초기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이 '시장 자유라는 교의를 깨뜨리는 어떤 것도 인정할 수 없다'에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 것은 하나인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사(社)의 파산이었다. 즉 미국의 금융자본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불안정한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독일, 일본 등과 더불어 본격적인(?) 단기성 투기자본 및 헤지펀드 활동의 규제라는 의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통제로서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단지 금융적·투기적 축적 활동을 영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몇가지 안전장치들을 고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금융시장이 본질적으로 불안정함을 인식해야 한다. 시장 원칙의 고수는 불안정의 고수일 뿐이다. 그런데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불안정을 견뎌낼 수 있는가? 시장 원칙을 다른 원칙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가 공공 정책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세계금융시장을 국제적으로 규제하느냐, 아니면 개별 국가들에 맡겨서 각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게 놔둬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후자의 상황은 세계 자본주의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⁶⁴⁾ 그래서 소로스는 '국제신용보험공사'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1998년 클린턴과 당시 재무부장관 루빈은 10월,

63) 예를 들면, 독일은 '목표환율제'를 제기하며, 급격한 환율변동에 의한 투기활동을 제한적이거나 제어하고자 했다.

64) 조지 소로스,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열린사회를 향하여], pp248-249, 김영사

IMF 연차총회에서 IMF의 특별인출권(SDR ; Special Drawing Right)의 발행을 통한 기금조성을 제안했다. 이러한 견해는 IMF 부총재인 스탠리 피셔로까지 이어진다. 그는 국제금융질서 개편에 있어서의 핵심은 국제적인 금융불안정 및 위기를 막아낼 '최후의 의지처(處)(수단)로서 국제적인 대부자(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의 필요성인데, 그것은 새로운 기구 혹은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현재로서는 IMF가 더욱 강화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⁵⁾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최종 대부자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그것은 특히 국제적인 기준-각종 금융 자유화 조치들-의 강화, 투명성 및 관련 정보의 교류 강화, 민간부문 차입 절차의 개선 등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IMF의 역할 강화를 주장하는 미국의 표면적 이유는 새로운 국제적인 기준과 감시 체제를 만들고, 세계 각국이 그 기준을 받아들여 충족시키는 데는 더 많은 시간-최소한 5년이상-이 걸린다는 점이다.

위의 두가지 안(案) 모두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제거'라는 이름아래 제안되었지만, 실상은 초국적투기자본의 활동을 최후까지 '보증'해주기 위한 안전장치에 다름아니다. 맘 놓고 투자할 수 있게 국제적으로 '보증'해달라는 소로스의 요구는 투기꾼의 후안무치(厚顏無恥)적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과 IMF는 그 '보증'의 역할은 IMF가 하도록 해야 하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세계적인 자유화, 탈규제 체제의 완전한 형성에 있어서 'IMF 구제조건'은 더없이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들은 세계 각국이 '국제적인 기준'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소 5년 동안은 IMF를 강화하자라는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초국적금융자본들에게 IMF는 더 없이 좋은 보증 제도였다. IMF는 초국적금융자본의 돈을 회수 해주기 위해 엄격한 '구제조건'(conditionality)을 전제로 돈을 빌려주었고, 그 돈은 다시 국제적인 은행과 투자자들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그러나 IMF는 점점 늘어나는 초국적금융자본의 이동량에 비해 재정자원은 턱없이 부족하고, 엄격한 구제조건의 부과는 각국 민중들로부터 광범위한 저항을 불러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채무국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는 비판까지 감수해야만 했다. 'IMF 강화'든 '국제신용보증공사 설치' 든, 그것이 갖는 의미는 초국적금융자본이 맘 놓고 투자(투기)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손해를 보면 국제적으로 책임(!)져달라는 국제 '신용보증체제'의 강화에 다름아니다.

한편 국제적인 금융감독의 강화, 헤지펀드에 대한 감시 강화라는 의제가 현재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올라와 있다. 그러나 금융거래의 투명성, 감독 및 감시의 강화라는 언급도, 사실 투기자본억제에 별다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그것의 실효성은 전적으로 '투기자본'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달려있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MAI 초안, 한미투자협정 표준안에는 '투자'의 의미가 대단히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사실상 단기성 투기자본 시장 조차도 자유화되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의

65) Stanley Fischer, [On the Need for an International Lender of Last Resort], Paper presented at the joint luncheon of the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and the American Finance Association, New York, Jan. 3 1999, <<http://www.imf.org/external/np/speeches/1999/010399.htm>>

'투자실행단계'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⁶⁶⁾는 언급은 결국 그들이 의제로 올려놓은 '단기성 투기자본 규제, 헤지펀드 규제'라는 의제 자체가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가를 증명해주고 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자본가들내부의 '단기성투기자본' 규제에 대한 논의의 의미를 폄하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로버트 브레너는 3가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단기 대부에 있어서의 자유시장에 대한 그들의 비판은 그 자체로는 옳다. 대규모 탈규제된 단기 자본 흐름은,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동아시아 위기를 근본적으로 악화시켰다. 둘째, IMF가 동아시아에 부과한 대부 조건에 대한 이들 경제학자들의 비판은 이 지역에 대한 IMF 개입의 제국주의적 성격을 그대로 강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개입은 고금리와 긴축정책을 부과하는 것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 이의 목적은, 한국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세계 역사에서 가장 눈부신 성장체도를 가능케한 경제적 규제와 보호체제를 파괴하는 것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이들 경제학자가 제기한 비판은 상당히 많은 이데올로기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는 그들이 은연중에, 물론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중심적 교의가 되어버린 것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을 통한 할당이 모든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보호하도록 기대될 수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⁶⁷⁾

결국, 세계 민중들은 자본가들의 호들갑 속에서 열려져 있는 논쟁의 공간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단기자본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는 규제를 '금융시장', 나아가 '시장 일반'으로까지 확장시켜나갈 전략이 중요하다.

66) 국내 비거주자에 의한 투기거래가 이미 한국에서도 가능하다. 지난 4월 1일,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에 의하여, 국내 외국환은행들이 비거주자와 자유로운 거래를 할 수 있으며, 또한 선물환 거래때 현물을 주고 받지 않고 차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이에 따라, 비거주자도 수출입거래 등 실제수요가 없이도 국내외국환은행을 통하기만 하면 달러_원 환율에 대한 선물거래를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투자협정 제2조에도 '투자실행단계'에서부터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한국도 투기꾼들에 의한 도박장화(化)에서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제 2조

1. 적용투자의 창설, 취득, 확장, 경영, 관리, 운용, 매각 및 다른 형태의 처분에 관하여 각 계약국은, 동일한 상황에서, 자국민 혹은 자국 기업에 의한 자국 영토에서의 투자에 대해서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하 "내국민대우"라고 한다)과 제3국의 기업 혹은 국민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와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것(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중 가장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이하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라 한다) 각 계약국은 자신의 국영기업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적용투자에 대해서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여타의 투자보장협정에도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규정은 존재하지만, 한미투자협정이 MAI와 비슷한 점은 '투자실행단계'(투자의 창설 및 취득 단계)에서부터 내국민 및 최혜국 대우 규정을 적용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67) 로버트 브레너, [확대되어 가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 신자유주의에서 공황으로?], '인터내셔널뉴스' 제 32~33호,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

3-2. 다자간투자협정(MAI) 반대투쟁과 계급적 합의

MAI 반대투쟁은 '무역 및 투자 자유화'에 맞선 세계 시민·민중들의 투쟁 역사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자유무역에 대한 투쟁에 있어서 남반구 및 북반구 노동조합 간의 갈등, NGO와 노동조합/좌파정당들 간의 대립의 역사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사회적 조항 논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대립과 갈등은, 세계 노동자와 민중들 간의 연대와 단결을 가로막는 큰 장애였으며, 남북민중 모두가 각국 자본가들의 대중동원에 이용당한 뼈아픈 역사였다. '사회적 조항'이란 일반적으로 노동·환경·인권 기준 등을 포괄한다. 이러한 조항들을 국제적인 자유무역협정에 삽입하느냐 마느냐를 둘러싸고, 남북정부들간, 노동조합들간 지난한 논쟁을 전개해왔다⁶⁸). 자본주의 황금시대, 북반구 노동자들은 자국 자본가들의 제3세계 자연자원과 민중들에 대한 약탈과 초과착취에 의한 이윤을 간접적인 수준에서나마 분배받았다.(물론 북반구 노동자와 민중들 전체라기 보다는 그중 상층부만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이 남반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임금수준 등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본주의 황금시대가 마감되고, 위기탈출을 위한 자본가들의 신자유주의적 공세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다. 북반구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탈국가화/탈지역화된 산업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고, 남반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들을 지지하는 것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된 것이다. 또한 북반구 국가들 또한 자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이라 일컬어지는 노동기준, 환경기준 등의 준수를 남반구 국가들에 요구하게 된다. 북반구 국가들은 '사회적 조항'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의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다. 아무튼 북반구 정부, 기업, 노동조합 할 것 없이 이들 모두는 각종 자유무역협정에 '사회적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고, 이는 곧바로 남북정부들간, 그리고 노동자들간에 첨예한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북반구 노동조합과 정부들은 사회적 조항을 강력히 지지하며, 남반구 국가들-정부, 고용주, 노동조합 모두-은 완강한 반대입장을 견지하였다. 각자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유를 갖다 붙이지만, 핵심적인 쟁점은 간단하다. 북반구 국가들(및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 극도로 싼 임금노동에 의해 생산된 남반구의 생산품들이 수입됨으로써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고, 그 결과 높은 임금과 현재의 고용수준을 유지하는데 큰 위협으로 다가온다는 것이다. 게다가 싼 임금의 유혹은 자국의 자본들이 남반구로 옮겨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것은 자신들의 고용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반해 남반구 국가들(및 노동조합)은 국제적인 교환에 있어서, 낮은 임금은 경제발전 초기에 있어서 자연적인 것이며, 향후 경제성장이 일정한 단계에 이

68) 사회적조항 논쟁과 관련한 이하의 서술은, 98년 8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국제연대' 토론회에서 발표된 필자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맞선 민중규범에 대한 제안]에서 발췌한 것이다.

르면 자연히 보상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편다. 더 나아가 이러한 국가들은 임금, 고용조건, 결사의 자유 등과 같은 쟁점은 국가주권의 문제들이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떠한 간섭도 주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특히 민족해방투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온 남반구 노동자들이 북반구 국가들에 의한 간섭을(설사 그것이 아무리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이라 할 지라도)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남북 국가들과 고용주들, 수출업자들간의 사회적 조항과 관련한 대립이 대다수 노동자들과의 이해관계나 그들의 권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편협한 이기주의에 의한 것이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북반구 노동자들의 남반구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사회적조항'으로 표현된 노동조건, 임금수준 등-은 많은 부분 그들의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되었음-비록 북반구 자본가들의 추동이 있었지만-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남반구 노동자들은 자국 정부의 민족주의적 동원 등에 휩쓸리면서, 토착 자본가계급의 든든한 동반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회적조항과 관련된 남북국가들, 그리고 노동자들 사이의 이러한 논쟁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지점은 양자 모두 국내적인 차원의 사회적 분화에 대해 어떠한 고려도 없다는 점이다. 북반구 노동자들은 남반구의 싼 노동으로부터의 경쟁에 직면하지 않은 산업에서도 다운사이징에 의해 서서히 직장을 잃어왔음을 기억해야 하며, 남반구 노동계급은 임금과 노동조건에 있어서 그들 토착 자본가들이 그들만의 보다 높은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에게 가져다준 구조적인 불행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조항을 둘러싼 논쟁의 역사 속에서, MAI 반대투쟁을 바라보면 그것의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MAI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전세계 시민·노동자들에게 '거부'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었다. NGO에서부터 노동조합, 급진적인 정당들에 이르기까지 'NO! MAI'라는 슬로건 속에 단결했다. 이는 과거 자유무역협정들에 대한 투쟁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었다. 그것의 특징을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1) MAI에 대한 거부, 반대를 명확히 했다는 점

* 이는 MAI 협정 속에 최소한의 '사회적조항'을 삽입하는 것 자체도 사실상 무의미하며 불가능할 정도로 초국적자본의 이해를 극단적으로 강변하고 있는 협정이었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포괄되어 있는 노동·환경 기준의 이행을 감시·통제하는 부설 기구들이 유명무실하다는 현실도 '반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실제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강력한 형태로 알려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도 노동, 환경 기준을 감시하는 부설기구가 존재하지만, 그것의 활동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강제력도 발휘되지 못한다.

2) 자본가들의 협정에 대비되는 시민·노동자를 위한 대안적 규범의 형성 노력이 전개되었다는 점

* '투자자와 부에 관한 시민·민중협약'(ATTAC 및 다수의 네트워크), '시민의 MAI를 위하여'(캐나다 폴라리스연구소) 등에서 보여지듯이, 시민·노동자들을 위한 대안적인 국제규범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가시화되었다. 그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본이동 자유화에 대한 통제와

일국적·지방적 수준에서 민중들의 다양한 권리 획득을 위한 프로젝트 등으로 채워져 있다.

3) 일국적·지방적 수준의 '연대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제안이 초국적인 수준의 통제 대책과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

*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노동·환경·인권 기준들의 강화를 주장하는 것이 남북 국가들, 자본가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위의 기준 및 권리의 보장이 모든 국가들의 경제활동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MAI 반대투쟁의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대안들 속에서, 초국적금융자본 통제와 민중의 기본권 획득을 위한 일국적·지방적 수준의 정책들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 조항'을 둘러싼 악무한적인 논쟁의 역사에 비교하면 진보적인 측면이 아닐 수 없다.

4. 금융시장 지배 및 초국적금융자본 통제를 위한 대안적 논의들

4-1/ 말레이시아 및 칠레 사례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는 지난 1998년 9월 1일, 환투기꾼들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고, 화폐 및 재정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재획득하기 위하여 강한 자본통제조치를 단행함으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말레이시아 통화 가치를 1달러에 3.8링깃화로 고정시키는 것 ; 2차 외환시장의 폐쇄를 통해 거래가 오직 팔라롬푸르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 ; 포트폴리오 투자의 경우 1년동안 그 나라에서 떠날 수 없도록 강제한 것 ; 해외계정 기금의 운용과 송금에 대해 제한을 부과하는 여러 조치들을 포함했다.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 정책의 목적은 링깃화에 대해 도박을 걸고 있는 투기자본 및 투기꾼들의 행동을 제한하는 데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목적으로는 화폐의 자주성을 재획득하고, 세계 경제 및 금융 환경의 있을 수 있는 더욱 심각한 악화로부터 말레이시아 경제를 보호하는 데 있다.

그 통제책들은 이전에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헤지펀드에 의해 수행되어 왔던, 링깃화에 대한 해외에서의 투기를 방지했다. 또한 이러한 자본통제가 맞닥뜨릴 수도 있는 자본탈출 혹은 통화 붕괴에 직면하지 않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경제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들을 갖도록 도울 수 있었다.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적자 지출, 조세 감면, 금리 인하 등의 효과가 발생되었다. 통화 통제책이 시행되기 전(前)인 1998년 8월의 4.2%와 비교하면, 1999년 1월의 단기실질금리는 1%이하였다.

<칠레> : 칠레는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자국경제를 보호한 자본 통제의 도입으로 유명하다. 1990년대 초에 많은 양의 자본이 자국으로 흘러들어올 때, 칠레 당국은 자본의 유입을

규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들을 채택했다. 1991년 6월, 해외 신용대부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20% 예치금의무가 부과되었다. 그 돈은 최소한 90일동안 은행에 예치되어 있어야 했다. 또한 국내 대부에만 적용되어왔던 인지세를 해외 신용대부에도 적용했으며, 1992년 5월 자본의 급속한 유입으로 통화 절상압력이 높아지자, 칠레당국은 예치금의무(reserve requirement) 비율을 30%까지 올렸다. 10월에는 대부금의 만기일과는 상관없이 준비금 예치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칠레는 예치금제도 덕분에 바람직하지 않고 유동성이 강한 자본유입을 구별해냄으로써, 자본 유입에 따른 부작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신용대부 기간과 상관없이 예치금으로 묶여 있음으로인해, 예치금의 비용은 투자의 지속기간만큼 줄어들기때문에, 단기자본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30%의 예치금에, 국제 LIBOR금리 5%에, 1달동안 칠레에 투자하기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투자자들에게 예치금의무의 비용은 29%; 2달일 경우 비용은 13.5%로 떨어진다. 똑같은 비율로, 1년이면 2.1%, 10년이면 0.2%까지 떨어진다.

칠레 정부의 자본통제 정책의 효과는 멕시코 페소화 위기때 명백히 나타났다. 멕시코가 서서히 페소위기로 빠져들면서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은 엄청나게 증가한 반면, 칠레는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해 상대적인 통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멕시코에서 발생했던 국제수지 위기를 회피할 수 있었다. 1993년 멕시코에서 포트폴리오 투자 유입은 GDP의 7.7%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는 1.4%였다. 1993년 칠레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 중장기 신용이 GDP의 4.6%였고, 포트폴리오 및 단기자본은 GDP의 4%였다. 1994년, 외국인직접 투자 및 중장기 신용대부는 GDP의 6.5%였으며 포트폴리오투자 및 단기 신용대부는 GDP의 3%였다. 결론적으로 예치금의무제도는 상대적으로 단기 투자흐름에 보다 높은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자본 흐름의 구성을 보다 장기적인 것으로 향하게 할 수 있었다. 또한 칠레 정부는 예치금제도를 통해 화폐정책에 대한 일정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재정적자가 증가하고 투자자들이 점점 칠레에서 관심이 멀어지자(아시아 위기의 영향으로, 주요 수출품인 구리값의 가파른 폭락), 칠레 당국은 예치금 비율을 30%에서 거의 밑바닥 수준인 10%로까지 삭감했다. 물론 그 정도로도 여전히 투기적 혹은 대단히 변동스러운 외국자본 유입에 대해서는 장벽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98년 9월 이래로, 칠레 당국은 '현재 어떠한 투기적, 단기 자본 유입은 없다'고 밝히면서, 잠정적으로 예치금 비율을 0%로 떨어뜨리기로 했다. 물론 칠레 정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예치금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이러한 칠레 정부의 방향 선회는 현재 논의중인 미주대륙 자유무역지대(FTAA) 협상과 관련이 깊다. 예치금제도와 같은 자본통제정책이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FTAA),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그리고 다자간투자협정(MAI)와 같은 국제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칠레의 예치금제도는 외국인투자자들에게만 적용되고 국내투자자들에게는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차별대우"에 해당한다. 이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 위반에 해당되어 금지된다. 또한 각종 국제협정들은 자본의 해외 송금에 있어서도 투자와 관련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는데, 예치금제도

는 그러한 자본의 이동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상호 배치된다. 칠레가 FTAA에 가입하려면 예치금제도는 철폐되어야만 한다. 실제 미국의 재무성장관은 칠레가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가입하려면, 자본에 대한 통제는 철폐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4-2/ 지구적 금융위기, 국제통화기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들(존 딜론)⁶⁹⁾

□ 약간의 배경 설명 : NAFTA, 멕시코 폐소화 위기, 브라질 위기, 그리고 최근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논의 등을 통해 알수있듯이, 남미는 초국적금융자본의 횡포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본 대표적인 지역이다. 또한 동시에 미주대륙 시민·사회·노동운동진영은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투쟁의 경험이 어느 대륙 운동세력보다 풍부하다. 존 딜론(John Dillon)은 '범기독교경제정의동맹(Ecumenical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pre GATT-Fly)'에서 1973년부터 일해왔으며, 1998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결성된 미주대륙사회동맹(Hemispheric Social Alliance)에 참여하면서,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한 민중운동의 대안 제시를 위한 "미주대륙을 위한 대안들(Alternatives for the Americas)"에 관한 글을 대륙의 여러 국가들의 사회운동세력들과 협력하여 저술하고 있다. 존 딜론의 글을 고찰함으로써, 미주대륙 시민·사회·노동운동세력의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투쟁의 경험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제안 : 존 딜론은 핵심적으로 지구적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여덟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있다.

a.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 : 세계금융체제의 개혁이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세계 시민·민중들이 새로운 체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로, "시민운동이 다자간투자협정에 관한 논쟁을 이끌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통화개혁을 위한 의제를 규정하는데 있어서 주도권을 잡을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현재 IMF는 미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며 '자본계정 자유화'를 여전히 목표로 갖고 있으며 이와 대비되는 많은 제안들 - 자본통제에 관한 프랑스의 지지, 국제적인 채무협정상의 긴급 현상동결 조항(Emergency Standstill Clause)에 대한 캐나다의 제안, 전면적인 자본계정 자유화 절차의 타당성에 관한 영국의 유보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b. 금리인하를 위한 조정된 행동 : 실질 금리를 낮추기 위한 국제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c. 국제적 통화 거래에 대한 토빈세 : 토빈세의 가장 중요한 효과로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생산적 투자를 자극하기 위하여 보다 낮은 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국내 통화 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각국에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 경제학자인 로드니 슈미트(Rodney Schmidt)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적절하게 입안된 토빈세는 실행가능하며, 자국 통화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형태의 외환거래에 한 나라가 일방으로 부과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토빈세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초기 단계나 지불이 종료되는 결산 단계보다는 외환 거래의 중간 및 마무리(netting) 단계에 적용될 때에 실행가능하다"고 한다. 또 토빈세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지지 근거로는, 사회·경제적 개발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대한 세입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데이비드 펠릭스와 란지트 사우는 "1992년 국제결제은행(BIS) 추정치인 약 1조3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일 통화교역량에 근거해볼 때, 0.25%의 토빈세가 모아질 금액이 1995년 연간 3천억달러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d. 실질적인 부채탕감 : 그는 세계은행과 IMF의 고채무빈국(Highly Indebted Poor Country) 제안이 너무 적은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부채탕감의 액수도 크지 않다고 비판한다. 더구나 부채탕감의 조건으로 6년동안 구조조정프로그램 수행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것의 의도 및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그는 저소득국가에 대한 100% 채무 탕감과 중간소득국가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 탕감을 요구한다.

e. 경제통합협상에 대한 재협상 : 그는 경제통합협정들 속에서 '투자관련 조항'이 갖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캐나다와 칠레간의 쌍무협상에서, 캐나다가 조약 체결 조건으로 칠레의 자본통제 수단인 '가변예치금제도'의 포기를 종용한 점을 극명한 예로 들면서, 경제통합협상의 부정적 역할을 밝히고 있다. 특히 모든 투자협정의 전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투자관련 조항이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mericas)에 포괄되어서는 안되며, 나아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진행되고 투자관련 회담의 기반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f. 핫머니를 견제하기 위한 자본통제 : 주요하게 폴 크루그먼(Paul Krugman)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즉, 아시아 국가들이 팽창적인 금융 및 재정 정책을 채택하기 위해 외환 통제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고금리를 유지함으로써 국제투자자들의 신용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g.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거래 규제 : 지난 9월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ong-Term Capital Management)사 붕괴에서 드러났듯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h. 국제적인 지불불능 법정 : 새로운 부채의 빚을 피하기 위해서, 일국의 파산법정이 파산한 기업의 채무를 재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채권자가 손실을 나누어 가지게끔 보장하는 국제법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국제 지불불능 법정은 채무국이 채권국과 아무런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채무조정권한을 갖는다. 동시에 "자국통화에 대한 투기 공세에 직면한 개발도상 채무국이 자본 거래에 대해 일방적인 현상 동결을 부과할 권한"인 '긴급채무동결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3/ 제3세계네트워크(the Third World Network)⁷⁰⁾

69) 존 딜론(John Dillon)의 견해는 주로 [인터내셔널 뉴스] 제40~42호(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PICIS)를 참조하여, 발췌하였다.

□ 약간의 배경설명 : 제3세계네트워크는 말레이시아 페낭에 소재해있으며, 지난 8월 한국에도 방문한 적이 있는 마틴 코어(Martin Khor)가 대표로 있다. 이 연구소는 동아시아 외환·금융위기 과정과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단기투기자본의 통제를 주장하며, 전세계 NGO 및 사회운동세력들과 함께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마하티르의 말레이시아가 외환·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자본통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연구소는 마하티르의 자본통제에 대해 적극적인 분석과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때문에 국제적으로는 '급진파', 국내적으로는 '우익반동'이라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데, 이러한 평가에 우리는 충분히 귀 기울여야 할 것 같다. 아무튼 남반구포커스(Focus on the Global South)와 함께 제3세계 소재의 대표적인 연구소중의 하나이다.

□ 마틴 코어는 동아시아 위기의 원인을 전지구적인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찾고 있으며, 그 핵심으로는 단기성투기자본, 헤지펀드의 투기적 공격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전지구적 금융시스템을 감시하고 개혁하는 첫번째 단계로 지적하는 것은 '투명성 결여의 해소'이다. 즉 "금융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누가 주요한 활동자인가, 그들이 내리는 결정은 무엇인가, 자금은 어떻게 시장에서 시장으로 옮겨 다니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 금융위기는 방지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그가 '투명성 제고와 개혁'이 필요한 분야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a. 금융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요 기관 및 활동자들(헤지펀드, 뮤추얼펀드, 연금기금, 투자은행, 초국적기업의 금융부문 자회사 포함), 그리고 그 행태와 가동수단 및 조종하는 시장 등의 내용, b. 북반구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통제 혹은 비통제 시스템, c. IMF의 투명성 제고 등이 그것이다.

그는 또한 G-7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혁과 관련된 입장을 비판한다. 즉, "G-7국가들의 초점은 (투자자들이 취약한 부문에 돈을 투자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도록) 각국의 '투명성을 더 많이' 높이고, 금융시스템이 한꺼번에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 시스템을 확실히 조절하는 데 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제3세계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고 감시함에 있어서는 '일국적차원의 접근법'을 뛰어넘는 '전지구적 차원의 접근법'이 더욱 필요하다는 얘기다. 여기에 '일국적차원'에서는 정부가 투기적 자본의 힘과 단기자본의 불안정한 유입과 유출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제 장치를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특히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고 한다.

이를 위한 그는 다음과 같은 정책수단들을 제안한다.

a. 토빈세 b. 현지기업의 해외차입시 중앙은행의 사전심의제 c. 제3세계 국가들이 자본 통

70) 제3세계네트워크의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검토는, 98년 8월 '아시아경제위기와 교회의 역할 : IMF, 인권과 교회'에서 발표된 마틴코어의 [동아시아 경제위기: 원인, 영향, 교훈]과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에서 발행하는 '인터내셔널뉴스' 제 43~44호의 자료글에 수록되어 있는 [금융위기를 방지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자본통제와 국제적 채무구조조정 메커니즘이 필수적인 이유]를 주로 참조하였다.

제의 수단들을 취할 수 있도록 승인 및 보장(G-7국가들의 탈규제적 입장의 재고) d. 외부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국내적 금융규제 조치 및 정책(칠레와 같은 '가변예치금제도', 국내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해외투자자들의 신용 판단을 위한 적정기준 마련, 내국인들의 해외 구좌 개설에 대한 규제, 투자수익의 해외송금에 대한 통제 등) e. 궁극적으로는 모든 부문에 걸친 내수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국내생산의 증대와 해외자금에 대한 의존도의 감소.

□ 마틴 코어의 견해는 핵심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금융시장 통제 문제를 '단기성 자본시장(투기거래)'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될 수 있다. '금융시장의 지배', 넓게는 '시장의 지배' 전체에 대한 통제의 관점을 갖지 않는 한, '투기거래'에 대한 규제만으로는 세계화의 재앙을 막아낼 수는 없다. 단기투기자본 규제를 '금융시장 지배'에 대한 저항의 첫걸음이라고 자위하기에는, 세계 자본주의가 너무 깊숙히 통합되어 버렸으며, 각국의 경제·사회·민중들의 삶을 경쟁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 초국적자본에 의한 외환·주식·채권시장에 대한 투기, 해외직접투자라는 미명하에 전개되는 M&A, 민영화된 공기업의 매입 등 다양한 형태의 공세를 퍼붓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전반에 대한 대응의 관점을 보다 분명히 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한계를 갖을 수밖에 없다. 둘째, 마틴 코어의 가장 큰 약점은 지구적 수준의 조절, 통제만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경제구조에 대한 진보적 전환이라는 문제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자본통제에 대한 분석 과정에 있어서도, 국내 독점자본의 문제, 계급투쟁의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자본 통제의 효과를 민중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국적·지방적 경제구조의 진보적 전환 그리고 민주주의의 실질적 강화가 동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4-4/ 노동권캠페인(Campaign for Labor Rights)

□ 약간의 배경 설명 : '노동권캠페인'은 미국에 기반한 단체이며,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야기한 재앙들, 특히 노동기준 및 임금의 하락 등 노동권과 연관된 이슈들에 대해 주목하여 활동하고 있다. 특히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의한 삶의 질 하락, 노동권 탄압 등에 맞서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멕시코한영노동자들의 자주노조 건설투쟁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현재 이 단체의 대안적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특히 '금융의 세계화')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기반한 단체라는 점과 대표적인 자유무역협정인 NAFTA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의 역사 속에서, 상당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노동권캠페인'에 대해 '미국 노동자들의 이해만을 편협하게 대변하는 단체'라는 비판도 있다.

□ 정책 제안 :

1. '노동권캠페인'은 규제되지 않은 세계화의 영향으로, a. 금융자본의 번덕성 b. 밑바닥을

향한 경쟁 c. 빈곤 d. 불평등 e. 민주주의의 쇠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밑바닥을 향한 경쟁 (race to the bottom)'이란, "유동성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가가 노동자를 해고하고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파괴적인 경쟁"을 의미하며, 현재의 세계화체제 속에서 모든 국가들이 그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세계 모든 민중들의 밑바닥 수준의 삶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2. '노동권캠페인'은 미국 정부에 대한 요구와, 국제적인 수준의 정책대안들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다.

2-1. 미국정부에 대한 요구는 금융 변동성(volatility)으로 인한 위협 감소 대책, 불평등, 빈곤, '밑바닥을 향한 경쟁'에 맞선 투쟁, 민주주의의 고양 등을 포함한다.

a. 국제적인 금융투기의 부정적인 영향의 차단과 국가의 통화 자율성 확보를 위한 자본 통제의 도입을 위해, 자본 유출입에 대한 국내통제,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토빈세), 외환거래율과 거래량에 따른 여타의 규제 등을 제기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적절한 수요의 유지와 증가를 위해 '세계적 빈곤과 환경에 대해 투자할 자원을 넓힐 것'을 제안하고 있다.

b. '밑바닥을 향한 경쟁' 체제를 제어하기 위한 일국적·지방적 정책들로 생활임금 보장, 중소기업 및 농장에 대한 신용대부, 빈곤계층의 짐을 덜어주는 방향으로의 조세정책 개혁, 단기적 외국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의 촉진, 보건·교육 등 공공지출의 증가, 지역공동체 및 민중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른 자원사용권리의 부여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외채의 탕감, 풀뿌리 민중들의 독립적인 조합의 건설 촉진 및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의 참여 보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c. IMF/세계은행 및 여타 국제금융기구의 민주화 및 G-7/8 회담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다. 앞의 기구들이 세계 경제에 대한 결정권은 막강함에도 그 정책 결정 과정은 대단히 배타적이며, 부유한 몇몇 국가들에 의해 휘둘러짐을 지적하면서,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투표는 세계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하고, G-7/8 모임은 북반구·남반구의 새로운 대화를 위한 창구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각 기구들의 활동과정, 결정과정, 프로그램 등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대중적인 감시가 가능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국제경제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 환경단체, 여성조직 및 시민사회의 여러 단체들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을 아울러 주장한다.

2-2. 국제적 수준의 정책제안

a. 정부, 은행가, 산업의 대표 및 각국의 시민단체 대표를 동수로 포함하는 세계경제에 관한 UN위원회를 구성하고, 브레튼우즈체제와 같은 새로운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어낼 것을 주장한다.

b. 현재의 세계적 금융시스템이 공동체, 지역 그리고 각국이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 미국이 타국 정부와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정책들로, 수출위주 성장전략의 전환과 국내 경제 성장에 기반한 경제정책의 추구, G-7/8국가들의 국내적인 수요 촉진을 통한 세계적 디플레이션의 억제, 안정적인 환율로의 복귀, 빈국들의 유동성 압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체제의 확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모든 외환거래에 대한 과세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금융 흐름을 불안정하게 하는 단기간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의 감소, 국제 통화에 대한 국내 화폐 자율성의 회복, 가난한 공동체와 국가에서 장기간의 환경적·사회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기금 마련 등이다.

c. 2000년말까지 최빈국의 외채 탕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것의 궁극적 목적은 모든 국가가 지속가능한 국내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외채탕감에 있어서 구조조정 혹은 그것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조건으로 내걸어서는 안된다. 한편 외채 경감을 받은 국가는 그것으로부터 얻은 이득의 적어도 20%를 기초 사회 서비스에 할당해야 하며, 국방 지출의 증가로 사용되어져서는 안된다.

d. 엄청난 기업권력의 저지를 위하여, 초국적기업 윤리강령(Code of Conduct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을 작성해야 하며, 그 강령에는 유독물질 방출 및 부주의한 처리에 대한 공개, 모든 소유기관과 청부업자, 하청업자의 이름과 주소 공개,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험한 물질의 공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 준수, 오염물 방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준수, 공장가동 중단시 사전고지 및 명확한 임금 지불, 조합 건설 노력 보호, 투자목적 보고, 적어도 자국에서 요구하는 사회 기준·환경 기준과 동일한 기준 유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 국제무역협정의 개정을 위한 재협상이 개시되어야 한다. 그것의 목표는 환경, 노동, 차별금지, 인권에 관한 조항의 포함, 노동·건강·환경을 위한 최소한의 보장기준, 기술적 지식에 대한 신속하고 값싼 접근 보장, 공공소유 또는 주(州) 소유를 요구하는 법적 기준을 받아들일 것, 투자가 최소기간 그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요구할 것, 무역 흐름의 증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금 체제의 마련 등을 주장한다.

□ '노동권캠페인'의 정책제안들은 전반적으로 과거 '사회적조항' 노선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해온 미국이란 국가에 기반해있는 시민·노동단체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자국내 초국적기업들의 해외이탈 현상과 제3세계에서 만들어진 값싼 상품의 엄청난 유입 등에 의한 고용불안·실업증가·임금하락 등의 상황을 목격해왔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의 시민·노동단체들이 자연스럽게 자국 출신 초국적기업의 해외활동 감시, 제3세계 노동 및 환경 기준 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왜냐하면 앞서 사회적조항 논쟁의 역사에서 잠깐 소개했듯이, 남반구의 싼 노동에 의해 생산된 상품들이 수입되면서 북반구(미국)의 노동자들에게는 현재의 임금 및 고용수준을 유지하는 데 큰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은 공장 이전의 '위협'만으로도 노동조합의 힘을 크게 무력화시킬 수 있었고, 나아가 남반구 자본과의 경쟁에서 더욱 유리한 고지의 점령을 위해 자국의 높은 '노동·환경 기준' 등을 제3세계 국가들에 '시민·노동

조합'의 동원 아래 '사회적조항'이란 이름으로 강요하게 된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바라볼 때, '노동권캠페인'이 제시한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결책"은 분명 진일보한 측면이 존재한다. 그것은 첫번째로, 가) "사회적 조항"을 국제협정에 포함시켜야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는 논쟁 속에서 간과되었던, 일국적·지방적 수준에서의 자본의 반노동자적·반생태적 이윤추적활동 통제를 위한 제안들이 '함께' 담겨있다는 점이다. '밀바닥을 향한 무한 경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국제협정을 어떻게 '인간적으로' 만드는냐"라는 문제와 더불어 국내적·지방적 수준에서, '조세감면경쟁의 중지 및 빈자들을 위한 조세제도 개혁', '생활임금 보장', '공공지출 확대', '지역공동체의 자율적 자원이용의 권리 보장'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노동권캠페인'은 "해결책"의 '3장: 정책목적' 4항(項)에서 위와 같은 정책들을 정확히 적시하고 있다. 두번째로, 나) '사회적 조항'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전략, 세계 금융체제의 재구성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략에는 외환거래과세(토빈세)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금융적·투기적 축적'을 제어할 생산부문의 정책들-수출위주 성장이윤을 통한 국내빈곤화가 아닌 국내 경제 성장에 기반한 경제정책 추구, G-7/8국가들이 국내적인 수요를 촉진시키고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막는 경제정책과의 조화, 중소기업, 농부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포함한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금융자원의 방향 전환 등-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노동권캠페인'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애매한 태도(국제무역협정의 개정), 초국적기업의 감시를 위한 '윤리강령'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사회적조항' 노선에 입각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있음이 아울러 지적되어야 한다. 기존의 무역협정에 '인간적인 무언가'를 넣는 것의 실효성은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4-5/ 투자 및 부에 관한 시민·민중협약(Citizen & People's Agreement on Investment and Wealth)

□ 약간의 배경 설명 : 네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었으며, 지난 OECD 파리회의때 전세계 수백개의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집단적 성과물이다.

□ 특징 및 몇가지 정책 제안 :

a. 통제의 포괄 범위 : '시민·민중협약'(CPAIW)은 "투자"에 대한 통제를 핵심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그것에는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를 포함한다. 즉, '단기성 투기자본' 시장을 넘어서, '투자' 일반의 영역으로까지 통제의 범위가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진일보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국내 또는 외국의 모든 투자자와 모든 투자는 민중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권을 중심으로 남녀 차별없이 모든 이들의 접근의 평등성을 증진시키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환경을 보호해야만 한다."(원칙 1)

b. 통제의 주체 : 시민·민중협약에서 통제의 주체는 '시민'이다. 국가는 OECD 내의 MAI 협상에서 나타났듯이, 그들은 단지 그러한 협정들에 서명할 모든 준비를 하고 있을 뿐이며, 초국적자본과 금융시장의 지배에 '정치적 저 자세'로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국제기구들 역시 대단히 불투명하며, 반민주적이고 그 어느 기구에서도 시민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다국적기업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윤리강령"은 전혀 효력이 없으며, 적합하지도 않고, 다른 것들을 무시한다. 결국 세계화에 대한 대항, 금융지배에 대한 저항과 민주주의적 영토의 재회복을 위한 주체는 세계 시민·민중이 될 수밖에 없다.

c. 통제를 위한 주요한 정책수단들 :

- 재화와 용역, 자본의 유출입에 대해 통제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 회복
- 환경에 있어서 '오염자부담의 원칙' 적용
- 자본의 통제, 금융투기와 과세 수단 설치
- 노동, 건강, 사회 혹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준들을 무력화시킴으로써, 국내 및 해외 투자자를 유치하거나 유치하려는 것에 대한 반대
- 국제협정 및 국제금융기구들간에 합의된 협정들에 대한 파기 : 기본적으로 다자간 투자협정(MAI)을 포함하여, 존재하는 모든 협정들-OECD, WTO, IMF 등에서 진행된-에 대한 파기를 주장한다.

"이 협약은 다자간 투자협정과 MAI와 같은 정신 속에 인식되는 혹은 존재하는 다른 모든 합의된 문서들-OECD에서 세계무역기구에서, 국제통화기금 등 '무역동반자' 혹은 다른 모든 형태의 포럼안에서 진행되는-을 파기시키고자 하는 쪽에 위치하고 있다. 그것은 민중과 개인의 서비스에 관해 투자와 부에 관한 국제협약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역할을 지녀야 한다."(원칙 5)

5/ 대안적 논의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

a. 자본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논의는 동아시아, 러시아 및 브라질 외환/금융위기를 경과하고, 97년 이후 전세계 시민·민중 진영의 MAI반대투쟁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투기꾼으로 유명한 조지소로스로부터 NGO, 노동조합, 급진적 정당에 이르기까지 자본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정책적 수단들을 제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을 극단적으로 범주화시켜보면, 가. '헤지펀드를 포함한 단기자본시장에 대한 규제'만을 주장하는 부류, 나. '단기성투기자본 및 포트폴리오 투자를 포함하여 초국적금융자본의 국제직접투자 일반'에 대한 통제를 제기하는 부류, 다. '초국적금융자본에 대한 통제를 하위범주(필수적 요소)로 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통제'를 제기하는 부류로 나눌 수 있다.

b. 단기자본시장에 대한 제한적 규제는 말레이시아, 칠레 등 이미 몇몇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부르조아 경제학자들조차도 그 필요성을 인정할 정도로 광범위한 동의를 얻어가고 있

다. 그를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금융거래의 투명성, 감독의 강화', '가변 예치금제도', '토빈세' 등이다. '금융거래의 투명성, 감독의 강화'는 현재 G-7재무장관 회의에서도 논의되고 있는데, 그것의 실효성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투명성 제고·감독의 강화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감독을 강화할 대상(對象) 투자'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달려있는데, 현재 다양한 국제협정들에서 정의되고 있는 '투자'의 개념은 대단히 광범위하여, '헤지펀드를 비롯한 단기성 투기자본'까지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받아 보호받기 때문이다. '예치금제도'는 단기성 투기자본의 유출입을 막는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지만, 최근 칠레에서도 예치의무비율을 0%로 떨어뜨려 사실상 철폐하면서,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의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 이는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FTAA)에 참여하기 위한 전제조건 형성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해외투자자들의 자유로운 자본 이동을 막는 제도는 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국에서의 자본통제조치들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도, 각종 투자 자유화 및 무역자유화 협정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토빈세'는 현재 실행되고 있는 곳은 없으며, 캐나다 등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그 실행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c. '시민·민중협약'에서는 초국적금융자본의 해외직접투자 일반에 대한 통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3가지 종류의 과세수단을 제기하고 있다. 그것은 '토빈세(외환거래세)', '해외직접투자세', '이윤세' 등이다. 특정국가 통화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한 '토빈세'의 도입을 넘어, '해외직접투자세'를 제기하게 된 것은 초국적기업들의 지사들간 거래가 세계 무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세계화와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속에서 각국의 조세제도를 교묘하게 회피하면서 막대한 이윤을 축적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초국적기업들은 전세계적으로 '자신들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낮은 세금을 과세하라'는 정언명령을 내리면서, 악무한적인 전세계적인 '조세감면전쟁'을 조장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통제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해외직접투자세'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직접투자세'는 특히 북반구 NGO 및 노동조합들에게서 많이 주장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자국의 높은 조세부담을 피해 제3세계로 이전하는 자국 출신 초국적기업들의 '공장이전 위협'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이며 "잃어버린 과세기반의 회복"이라는 측면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단기성투기자본'에 대한 통제를 넘어선, 해외직접투자 일반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는 전적으로 옳바르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d. 한편 초국적금융자본 통제에 있어서, 관건적인 문제중의 하나는 각종 "투자 및 무역자유화 협정"에 대한 태도 문제이다. 현재 이에 대한 입장은 '파기' 혹은 '재협상' 등으로 대립되고 있는데, '시민·민중협약'은 '파기'쪽에 가까우며, 노동권캠페인/제3세계네트워크는 '재협상'쪽에 가깝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국제협정으로는 다자간투자협정(MAI)

를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투자자유화협정들이다. 그것은 쌍무협정으로도 나타나고, 세계무역기구(WTO)/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FTAA) 등 자유무역협정 및 기구들의 논의 테이블에도 의제로 올려지고 있다. 특히 다자간투자협정 논의가 WTO 밀레니엄라운드로 이전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전세계 시민·민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있다. 앞의 칠레 예에서 살펴보았듯이, 일국적수준의 자본통제 실현을 위해서라도, 국제적인 강제시스템으로서 자유무역협정 및 투자자유화협정은 분명 반대되어야 한다. 특히 초국적금융자본의 배타적 이해실현을 위한 투자자유화협정에 관한 모든 논의의 중단과 파기를 주장해야 한다. 한편, 상업 및 서비스 이동의 자유화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태도는 쉽게 얘기되어질 수 없다. 현재 세계 모든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깊숙히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로부터의 급격한 탈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세계시장 지향의 경제정책-수출주도 경제성장전략-을 세계 모든 국가에 강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논리에 반대하여, 자유무역에 대한 일정한 통제 및 다양한 내향적인 경제정책의 구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무역협정들에 대한 태도가 정립되어야 한다. 다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재협상'을 주장하면서, 기존의 협정에 '시민적·노동자적' 조항들 및 기구들을 삽입하거나, 설치하는 요구 투쟁은 지금까지의 경험 속에서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e. 금융자본의 민주화 및 통제를 필수적 요소로 하는, 생산의 국제적 통제를 위한 논의 역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부분은 "내향적인 경제전략으로의 방향전환, 자유무역에 대한 통제 및 국제적으로 새로운 경제 협력·통제의 관계 형성"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큰 목표의 하위 범주로 초국적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위치지워진다. 또한 국제적인 기구들의 민주화가 아니라,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부여받는 국제기구 및 협약의 재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생산적 축적이 자본축적의 본질이라는 점, 세계화가 "금융의 세계화"만으로 왜곡되게 인식되는 것을 제어하고, "생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능력"의 제고란 원칙을 환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적은 타당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단기자본시장 통제'는 한축으로는 금융시장 통제를 위한 세계 시민·민중들의 개입공간을 넓힘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화에 대한 정치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적당히 규제만 된다면 세계화 자체는 괜찮다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러한 논의들은 초국적금융자본의 해외직접투자, 금융지배적 축적이라는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으며, 그로인해 생산적 축적과 금융적 축적간의 '관계'를 생산으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전세계적인 실업문제의 확산은 세가지 수준의 문제가 결합되어 증폭하고 있다. 1) 투기적 축적으로의 전화 경향, 2) 과학기술의 발달, 3) 생산의 세계화(최적화전략) 등이 그것들이다. 특히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그 자체는 노동조합의 협상력 및 교섭력을 극도로 약화시키고 있다. 그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그러한테 첫번째로는 일국 통화에 대한 투기적 압력 그 자체로 노동조합의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로는 한국의 민주노총 파업투쟁에서도 금방 드러난다. 노동자들의 파업시, DJ의 최대 이데올로

기적 무기중의 하나는 '외자가 다시 나간다'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공세가 노동조합의 협상 전제조건으로 전화되고 있다. 두번째 측면은, 생산의 세계화에 따른 '공장이전의 위협'이다. 실제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그 위협만으로도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심하게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 속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교섭력, 협상력, 실질 임금 등이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과 거래, 자유화체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국적금융자본의 투자의 자유, 자본거래의 자유 등은 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인식과 대응이 필요하다.

g. 과거 사회적조항을 중심으로 남반구·북반구 시민·사회·노동운동세력들간의 논쟁이 전개되었다면, 현재는 '금융시장의 지배'에 맞선 투쟁의 방향, '초국적금융자본의 자유로운 투자·투기활동'에 대한 통제를 중심으로 논쟁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위 테마에 대한 운동세력들간의 일정한 동의는 존재하는 듯이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 및 자본가들이 '금융흐름 투명성 제고', '헤지펀드 활동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간접적 규제를 주장하는 반면, 세계적인 시민·민중운동세력들은 '금융거래과세' 등의 직접적 통제를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특히 MAI 반대투쟁을 경과하면서, 세계의 시민·민중운동세력들은 상당한 응집력과 동의 지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과거 국제적인 연대·조정 투쟁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다. 이러한 가능성의 공간에 한국 민중들이 어떻게 개입하고, 연대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5. 한국 민중들의 개입 방향

IMF 경제위기 논쟁 속에서, 초국적금융자본 통제의 문제는 '생산환원주의적 경향' 속에 묻혀버린 측면이 강하다. "현시기에 동아시아가 가장 먼저 공황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은 불안정한 세계금융체제에 극히 노출된 조건 속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과잉축적이 그간 이지역에서 이루어진 데에 기인하는 것이다.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은 이들 정치-경제체제가 지닌 근본적인 구조적인 결함에 기인하는, 이들 국가들에게만 해당하는 고유한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이윤생산체제 내지 시장경제체제 자체의 모순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이다. 다시 말해, 한국을 비롯한 현시기 동아시아의 경제위기의 기본적인 측면은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에 고유한 특수적인 위기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 체제의 어떤 구성부분도 결코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세계적 수준의(그러나 현시기에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표시되고 있는) 자본의 과잉축적 위기인 것이다."⁷¹⁾

71) 김세균, [IMF 관리체제, 김대중정권 그리고 노동운동], IMF 체제와 한국사회 위기논쟁(문화과학, 1998)

김세균 교수는 '과잉생산'과 '과잉축적'의 개념을 구별하여 사용하면서, '과잉축적의 위기'로 규정하고는 있다. 당시 '동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경제체제가 갖는 특수한 구조적 결함'을 위기의 원인으로 재벌개혁론자들과의 논쟁 지형 속에서, 자본의 과잉축적의 위기라는 규정은 분명 진보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김세균 교수는 신자유주의적 체제 속에서, 자본의 과잉축적이 어떠한 방식, 경향들을 띄면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지 않다.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 '경제성장'은 세가지 특징, 즉 "디플레이션, 금융긴축, 실업의 폭발" 속에서 진행되었다. 케인즈주의 체제하의 자본축적 과정과는 아주 상이한 특징들을 보인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시대 경제위기가 케인즈주의 시대와 똑같이 '자본의 과잉축적의 위기'라 하더라도, 양 시대간의 종별성이 논의되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종별성에 대한 논의의 핵심에 필자는 '금융지배적 축적'(프랑스와 웨네), '화폐적/통화적 축적'(위너 본펠트)의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IMF체제 이후 한국의 경제구조도 완전한 '자유화, 개방화, 탈규제' 체제로 접어들었으며, 국내의독점자본에 의한 금융적·투기적 축적 경향도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몇가지 지표들 속에서 유추해볼 수 있다.

* 실업의 증가, 삶의 질 하락,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 주식시장의 활황

생산활동 및 지출동향	1997	1998					1999
	1/4	1/4	2/4	3/4	4/4	연간	1/4
국내총생 산(GDP)	4.9	-3.6	-7.2	-7.1	-5.3	-5.8	4.6
산업생산 (제조업)	5.6	-2.7	-6.8	-6.6	-5.0	-5.3	4.8
(건설업)	5.6	-4.6	-10.4	-9.1	-4.7	-7.2	10.7
(서비스 업)	-3.5	-3.9	-6.6	-10.1	-13.3	-9.0	-15.1
정부, 기타	6.6	-4.5	-7.4	-6.2	-3.4	-5.4	6.6
최종소비 (민간)	2.3	-1.2	0.4	-0.6	-0.1	0.2	-1.3
고정투자 (건설)	4.1	-8.4	-9.7	-8.9	-5.8	-8.2	5.0
(설비)	4.5	-9.9	-11.2	-10.4	-6.9	-9.6	6.3
수출	0.8	-20.6	-23.7	-22.2	-17.9	-21.1	-4.3
수입	-1.9	-5.9	-7.8	-12.0	-13.7	-10.2	-13.7
	4.2	-38.3	-46.1	-39.3	-27.4	-38.5	12.9
	11.1	25.7	13.2	8.0	8.8	13.3	12.4
	7.8	-27.2	-25.5	-25.9	-9.0	-22.0	27.5

<자료 : 한국은행, 1995년 불변가격기준>

(단위: 전년동기대비, %)

- 가용외환보유고는 97년 말 88억7천만달러에서 지난 15일 현재 573억8천만달러로 늘었다.
- 원-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당 2천원을 돌파했던 것이 울들어 1200원 전후에서 안정되었다.
- 연 30-40%까지 치솟았던 금리는 현재 콜 금리는 연 4%대, 회사채금리는 8%대로 조정되었다.
- 주식시장의 종합주가지수도 200대에서 800대까지 상승했다, 최근 690선으로 조정되었다.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5%에서 올 1분기 0.7%로 안정되었다.
- 내수판매는 지난해보다 8.7%증가해 IMF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조사됐다.⁷²⁾
- 기업매출이 지난해보다 4.5%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⁷³⁾

구제금융 1년 6개월 경제지표 비교

부문	지표	97년 11월	99년 3월
종합경기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99.7	89.1
생산	산업생산지수	114.4	121.1
	생산자출하 지수	116.6	126.5
	평균가동률(%)	76.7	74.6
	생산재고지수	132.3	99.7
소비	도소매판매액지수	108.2	104.7
	내수용소비재출하지수	105.6	99.5
	백화점판매지수	108.8	101.2
	도시주택가격지수 (90년 12월=100)	95.2	84.4
투자	기계수주액 (10억원)	1,666	1,760
	건설수주액 (10억원)	4,785	2,301

* 지수는 95년=100기준, 통계청 (자료; 한겨레신문, 1999.5.21)

이처럼 화려한 경제지표들 뒤에는 실업자 4백만, 임금의 엄청난 하락, 공공요금 인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⁷⁴⁾라는 배경이 존재한다. 또한 주식시장의 활황, 채권시장의 발전, 외환

72) 전경련의 '기업 내수 판매 및 수출전망조사' 결과, 한겨레 5월 21일자

73) 전경련, 한겨레 5월 21일자

거래의 실질적 자유화는 금융적 축적 경향의 강화를 위한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주고 있다.

* 외국인직접투자의 폭발적 증가와 투기화

올해들어 이미 2억4천만주 이상의 국내 주식을 외국인들이 사들였으며, 삼성전자, 주택은행, 한국유리, 메디슨, 쌍용제지, 한라공조, 한국고덴시 등 외국인 보유지분이 50%넘는 기업이 12개에 달한다. 또한 "지난해 10월 이후 주가상승을 주도해온 외국인 투자자들이 울들어 해외로 송금한 증권투자자금이 67억3천4백만달러"에 달한다. 시기별로 구분해보면, 지난해 8-11월에 월별로 6억3천5백만 -9억3천4백만달러에 불과했으나, 12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해 12월 15억 9천7백만달러, 올해 1월 16억2천1백만달러, 2월 10억1천7백만달러, 3월 18억5천9백만달러로 늘어났다.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종합지수상승폭(27.5%)을 훨씬 웃도는 45.3%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⁷⁵⁾

채권시장의 경우도 지난 4월29일, 국제전문유통시장이 개장하면서, 하루 평균 3조283억원 어치가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개장전과 비교하면(하루 평균 2606억원) 11.6배나 늘었다.

* 외환 금융거래의 실질적 자유화

외환시장의 경우, 지난 4월 1일 '1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초국적금융자본의 투기놀음에 사실상 노출되었다.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실수요원칙(자본·경상거래와 관련해 실수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거래가 가능하다는 원칙)이 폐지되면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도(비거주자)도 국내 외국환은행들과의 거래를 통해 선물환거래 등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선물환거래때 현물을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국내에서도 NDF(비인도결제 선물환)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투기의 위험성은 더욱 높아졌다. 또한 국내기업에 의한 1년미만의 단기해외차입, 해외 부동산투자 등도 사실상 자유화되었다.

*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체결 기도

스크린쿼터제를 계기로 쟁점화된 한미투자협정은 초국적자본의 권리현장으로 악명높은 MAI의 복사판이다. 투자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 속에서 '투기'활동 조차도 '투자'로 인정되어 보호되어야 하며, 초국적기업의 국내 기업활동에 어떠한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이행의무부과 금지의 원칙) 만약 노동·환경 기준 등을 부과할 경우, '미래소득 상실' 혹은 '간접적 수용'이라는 미명아래,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야만 하며, 실제로 대부분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한일투자협정의 경우, 일본측이 주장한 내용을 뜯어보면 더욱 경악할 노릇이다. '노조진입

74) 상위 20% 고소득층이 지난해 전체 국민소득에서 차지한 몫은 39.8%로 전년의 37.2%보다 늘어났으며, 반면에 하위 20%의 저소득층은 소득점유율이 8.3%에서 7.4%로 떨어졌다.(한겨레, 5월 21일자)

75) 이상 통계치는 '문화일보', 5월 7일자

자 임금지급의무' 철폐, '일정비율 이상 내국인고용의무' 부과 금지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올해 11월부터 공식적으로 개시되는 WTO 밀레니엄라운드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보다 더욱 포괄적인 자유화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이며, 더욱 중요하게는 작년 중단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다른 이름으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현상들 속에서 한국 경제가 완전히 자유화·탈규제체제로 전환되고 있으며, 초국적금융자본의 외국인직접투자, 국내독점자본의 금융화 경향, 그로 인한 노동자·민중의 삶의 질 하락이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민중들에게도 세계화 및 자본이동의 자유화·탈규제에 따른 재앙들이 뚜렷한 형태로 다가오고 있으며, 따라서 초국적금융자본의 통제, 금융시장 지배에 맞선 투쟁, 자본이동의 자유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각종 국제협정들에 대한 대응이 '당장의 현안이 아니라고 해서' 결코 미뤄둘 과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소결 :

1. 자본의 국제적 통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단기성투기자본, 초국적금융자본, 상품 및 생산자본의 무한경쟁 시스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통제를 가하는 일련의 정책들로 이해해야 한다.
2.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초국적자본의 투기활동을 촉진시키고 있는 '한일/한일투자협정' 및 WTO 밀레니엄 라운드에 대한 강력한 거부투쟁이 필요하다.
3. 증가하고 있는 초국적자본의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통제가 요구된다. 이는 금융거래의 자유화에 대한 투쟁 뿐만 아니라, '외국자본의 도입'을 위한 '조세감면', '노동기준 악화' 등 반민중적인 외국인투자자유인책에 대한 반대투쟁을 포함한다.
4. 현재 전세계적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금융거래과세'(토빈세, 해외직접투자세, 이윤세) 수단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투자과 부에 관한 시민민중 협약

서설

현재의 투자에 대한 보고

MAI 협상은 1998년 4월말에 “반성의 기간”을 두기 위해 6달간 연기되었다. MAI는 투자에 대해 특히 광범한 정의를 제시한다. 그 조항들은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외국기업에 적용될 뿐 아니라, 천연자원, 사적 소유권, 부동산, 농지, 지적 재산권 등 한마디로 이윤을 낼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모든 금융적 이익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에 있어 무엇이 “투자”를 구성하는가에 대한 명세서를 만드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이는 두가지 큰 범주로 분류될 수 있다.

I. 금융투자

이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옵션 등 포트폴리오 투자(PEI)라 불리는 금융투자에 관련된다. 최근에 이러한 투자들은 놀라운 발전을 이뤄왔다. 그들의 양과 휘발성(volatility)은 자본플로우가 모든 제약에서 자유로운 세계에서 점점 높은 빈도로 관찰되는 위험한 불안정성의 주된 원인이다. 멕시코(1994-95), 러시아(1996-현재), 아시아(1997-현재)에서의 공황은 이를 실증한다.

“기관투자자”에는 다음이 속한다:

연금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국제은행

연금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들은 1995년에 국제결제은행(BIS) 측정 기준으로 도합 210억 달러가 넘게 운용했다. 이러한 운용자들은 90년대 초 이래로 그들의 재정규모를 사실상 두배로 늘렸다. 1990년-1996년 사이에, 11개국 중 10개국에 있어 연금 기금에 의해 운용된 자산은 4조1200억불에서 7조1850억불로 늘어났다. 보험회사 운용자산은 4조6620억불에서 7조9820억불, 투자회사 운용자산은 2조1290억불에서 6조1520억불로 사실상 세배로 늘었다. 다음 표가 이러한 활동을 요약했다.

전문 투자자들의 관리하에 있는 210억불은 모든 산업국의 GNP를 합산한 것보다 크다. 이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에 대해 3500불씩 나눠줄 수 있는 액수인 것이다. 미국의 기관투자자들이 그 50%를, 일본이 14%를, 영국이 9%를, 프랑스가 6%를, 독일이 5%를 운용하고 있다.

BIS는 전업적인 투자산업의 비상한 성장의 원인을 특히 다음에서 찾고 있다: 설사 이러한 기관투자자들이 체제상 자국의 자산을 선호한다고 하여도, 판돈의 양이 그처럼 어마어마하여 그들의 투자정책에 있어서의 사소한 변화도 세계적으로 완전히 부조화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리하여 G7 국가 기관투자자들의 자산이 1%만 투자된다고 가정해도.....

남부국가들(이에 반드시 산업국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아닌데,)의 불안정성의 위험은, BIS가 “양떼 본능”이라고 부르기 주저하지 않는 것이 시작되면서 양(+)의 피드백 효과에 의해 증대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불확실성의 시점에 있어 전문적인 투자 운용자들을 사로잡는다. 그들은 그러므로 그들 중 가장 현명한 자, 다시 말해 전에 “시장보다 잘” 행동한 자의 행동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다.

어떠한 운용자도 그 자신이 홀로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각자는 “...하는”, 그리하여 “...를 수행중인” 떼거리의 행동을 따르기를 선호한다. 양떼같은 기관투자자들의 관리하에 있는 이러한 거대하고 변동스러운 자금의 합계에는 은행에 의한 국제투자가 합산되어야 한다. 1997년 말에 이루어진 그들의 총 국제대부의 합계는 5조2850억불에 달했다. 이러한 기금은 조금만 곤란의 기미가 있어도 사라져버릴 것이다.

그러나 취약한 국가들에게 시장과 단기투자자의 휘발성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양을 운용할 부담을 진 소수의 운용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단을 주기는 커녕, 자본 흐름의 자유화를 확대하도록 모든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MAI는 모든 국가를 이러한 확대되는 자유화의 길로 가도록 강요하는 기구로 여겨진다. IMF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 압력 하에서, 자국 회사에 대한 외국자본의 참여를 제한된 자에게 국한시켰던 말레이시아와 한국은, 그들의 정책을 바꾸도록 강요받았다. 칠레는 여전히 포트폴리오 투자가 자국에 적어도 1년간 남아있어주기를 원하나, 이러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1994년의 설립 이래 최초로, IMF는 자본흐름의 완전한 자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그 규약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 4조 3항은 “회원들은 국제 자본운동을 규제하는 데 필수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IMF 총재 미셸 캉드쉬에게, 그 조항은 케케묵은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자유화는 “거스를 수 없는 경향”이 되었다는 것이다.

1997년 9월에 있는 IMF와 세계은행의 연례회동에서, IMF 서열 2위인 스탠리 피셔는 국제 자본에 대한 모든 규제의 철폐를 “불가피한 단계”로 기술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완전한 자유화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피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시인한다.

이는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사실, 신자유주의자들이 뭐라 생각하든, 화폐는 그 가격이 수요와 공급, 즉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비누나 토마토같은 상품이 아니다. 화폐를 나머지 것들처럼 오직 상품으로 파악하여 모든 환율이 부침하도록 내버려두고 모든 국경들에 모든 자본흐름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의 조건을 만드는 것이다. MAI는 모든 이러한 경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II. 외국인 직접투자

두번째 범주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고전적인” 경제활동에서의 투자에 관련된 것인데, 이는 외국인 직접투자(FDI)라 불린다. 이러한 투자는 UN이 44,000개(계열사 280,000개)로 파악하는 다국적기업(TNC)에 의해 이루어진다. 직접투자의 문제점은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운용되는 21조\$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적어보일 것이다. 그들은 또한 본질적으로 훨씬 덜 휘발적이다. 1996년에, 다국적기업의 투자주식은 3조2000억\$, 즉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이동된 양의

오직 15%에 불과했다. 기관투자자처럼, 1985년 이래 직접투자는 현격히 증가했다. 1990년 이래, 그것이 외국에서 도입된 자본("유입")의 문제건, 아니면 외국으로 투자된 자본의 문제("유출") 이면간에, 다국적 기업의 주식은 사실상 두배로 늘었다.

미국은 다국적 기업의 종주국이자 유치국으로서 공히 역할하는 압도적인 지위를 보여준다. (유입의 20%, 유출의 25%) 우리는 또한, 일본 다국적 기업들이 지난 10년에 걸쳐 645%나 해외투자를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외국투자를 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왔음을 주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어떠한 국가도 투자자본을 도입 또는 수출함에 있어 MAI 형태의 기구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언급되어야 한다. 1985년-96년의 기간 동안, 특히 프랑스 회사들은 5.5배나 그들의 해외투자를 증가시킴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겪지 않았고, 또한 외국의 다국적 기업들도 그들의 프랑스내 자산을 늘림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약 1800개의 양자간 투자협정이 이미 체결되었고, 그 중 몇몇은 북반구와 남반구 간에 이루어졌으므로 일방적인 것이라 할 수 있어 약소국에 대한正義를 위하여 재협상되어야 한다. MAI는 투자 흐름을 보장하는 데에 전혀 불필요하다; 그것은 그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다른 점에 주목해야 한다.

III. 규제받지 않는 투자의 위험성

1. 집중과 디플레이션

투자가 징표하는 첫번째 위험은 (그 본질에 있어) 소수의 초대형 기업으로의 집중과 과점을 형성하는 경향이다. UN이 44,000개 다국적 기업을 열거했음에도, 또 한개 또는 여러개의 해외계열사를 가진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해외자산의 20%는 100대 다국적 기업에 속해 있다. 각 산업국에서, 50대 기업은 그 국가의 해외투자의 적어도 반을 맡고 있다.

수많은 논자들은 "투자의 자유"에 의해 심화되는 국가와 국민의 또다른 위기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생산에 있어서의 과잉시설의 귀결인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축? 과잉투자의 결과? 그리고 고용의 지속적인 감소.

아시아 위기가 터지고 일본이 경제 재무장에 곤란을 겪은 이래 이러한 공포들은 당연히 심화되었다. William Greider는 이러한 경제위축(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한 가장 뛰어난 연구를 수행한 사람 중의 하나이다.

투자는, 본질적으로 소수 대형회사들의 투자였음에도, 오늘날 완전히 무정부주의적인 과정이다. 그라이더는 세계경제에 이미 존재하는 과잉시설을 강조한다. 시장은 언제나 수급을 균형잡으며 스스로를 조절한다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주장과는 반대로, 현실적으로 동일 부문으로부터의 자본의 자유와 다국적 기업의 조정되지 않는 투자의 자유는 새로운 조건을 창출했다. 시장의 자기수정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또는 너무 늦게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극도로 야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그라이더는 이미 작동중이거나 1998년에 작동 예정인 공장들으로써, 세계는 2000년의 세계 수요를 1/3이상이나(즉 미국 자동차산업의 총생산량만큼) 초과하는 양인 연간 7900만의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산업 분야의 한 경제학자는 이미 "모두가 수출하기를 원하는" 과잉설비가 존재한다고 시인하는데, 이

는 "항상적인 초과공급의 상황과 가격-임금에 대한 질하 압력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여러 다른 산업에도 역시 해당된다.

미국 화학공업협회장은 화학산업에서도 세계적인 초과공급이 존재한다고 밝힌다. 그라이더가 인용하기를, 로슈의 리서치 담당자는 제약산업에서 앞으로 10년 동안에 모든 생산물을 흡수하고 통상적인 투자수준을 적정화하기 위해서는 판매고를 두배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라이더는 철강, 항공, 전자, 방직 등 다른 예들을 든다. 프랑스 경제학자 크리스띠앙 뵈소는 은행업에 있어서도 초과설비를 관측한다.

디플레이션은 과잉공급과 수요 폭락이 있을 때 발생한다. 아시아의 공황은 그 생산물을 더 팔기 위해 계속적으로 가격을 저하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했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허리띠를 조여야 할 이들은 타국의 노동자들이다. 많은 다른 이들처럼, 비즈니스워크와 파이낸셜타임즈마저도 이에 대해 당연히 걱정하고 있다.

2. 노동에 대한 공격

다국적 기업은 경기변동에 따라 그들의 피고용자들의 수를, 그리하여 잠재적 고객들의 수를 계속적으로 감축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기여한다. 포디즘("그들이 나의 차를 살수 있을 만큼 나의 종업원들에게 지불한다")은 세계적 수준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 다국적 기업에 관해서는, "투자"와 "고용"을 연계하는 것은 그르다.

투자의 많은 부분은 고용에 대해 중립적이거나 (그보다는 더욱) 부정적이고 위험하다. 다국적 기업의 3%은 현존사업의 합병과 인수에만 골몰해 있기 때문에 아무런 고용도 창출하지 않거나 대부분 종종 몇몇 고용을 없앤다. 그리하여, 總다국적기업에서 1995-96년 두해에 걸쳐 6660억불 중 5120억불(즉 77%)이 이러한 유형으로 운용되었다. 사실, 이는 더이상 투자의 문제가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초대형 회사가 존재하는 다양한 시장 내의 심화되는 경제력 집중의 문제이다. UN은 덧붙여 "훨씬 많은 사용은..."이라고 예측한다.

1995년에, 세계총생산(GWP) (세계에서 측정된 모든 경제활동의 총합)은 27조6570억\$로 추산되었다. 같은 해에, 100대 세계기업의 산출량은 4조\$ 이상, 다시말해 GWP의 15%였다. 이러한 100대 거대기업들은 오직 1200만명을 고용했다. 그래서 이들 다국적 기업 하나당 피고용인은, 청소부로부터 최고경영자에 이르기까지, 평균 342,000\$의 산출을 담당하였다. 10대 주도적 다국적 기업에 적용되는 동일한 계산을 하면, 피고용인당 425,000\$의 산출량이 나온다. 회사가 클수록, 그 표면적에 비례하여 고용하는 사람수는 줄어든다(譯註: 입방체가 n배 늘어나면 부피는 n³배, 표면적은 n²로 비례하여 커지므로 표면적/부피=1/n는 체감한다는 표면-부피 법칙을 일컬음).

1993-1996년 사이에, 가장 큰 다국적 기업들은:

외국에서의 산출량을 26% 늘렸다.

외국에서의 피고용인을 4%만 늘렸다.

그들의 총 고용인 수를 4% 줄였다.

즉 모든 이러한 정리해고는 그 회사들의 종주국, 즉 OECD 국가들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다. 이는 매우 논리적이다: 자본비용이 이들 특권적 고객들에 대해 가장 낮고, 그들의 운송, 천연자원 비용이 계속 떨어지고, 정보의 유통이 사실상 자유로우며, 조세가 우리가 뒤에 보듯이 대개 회피된다면, 노동비용은 총비용의 60-70%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회사들이 경쟁하는 수단은 바로 그들의 노동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UN 측정치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에 의해 창출된 각각의 직접적인 고용은 1-2개의 추가적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진다. 두 종류(직접고용+추가적 고용효과)의 일자리를 모두 감안해도, 100개의 일류회사들에 귀속되는 총고용량은 (적어도 15억인이 실업이거나 불완전고용되어 있는 세계에서) 3600만에 불과한 것이다.

다국적 기업들은 북반구에서도, 특히 남반구에서도 결코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저개발국가에 대한 그들의 투자는 80%가 십여개의 국가(중국이 그중 수위)에 집중되어 있다. 남쪽을 향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비율의 증대한 향상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약 30%? 다국적 기업의 투자는 대부분 OECD 국가들 간에 이루어진다. 싱가포르, 홍콩을 제외한 어떠한 국가에서도, 이러한 회사들은 현존 고용의 1% 이상을 공급하지 않는다.

그들의 산출량에 비하여, 중소기업들은 다국적 기업보다 훨씬 많은 노동을 공급한다. 그러나 MAI와 같은 협정은 超대기업들의 요구만 철저히 지향하고 있고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입힐 것이다.

사실, 다국적 기업이 창출하는 일자리의 수를 계산할 수 있다 해도, 그들이 파괴하는 일자리에 대해서도 똑같이 이야기할 수는 없다. 1997년의 세계투자보고서는 이 주제에 대해 꽤 신중한데, 주어진 국가들에서, 다국적기업들은 그들의 규모 때문에 특별한 이점을 취하며, 개도국 시장에 침입하여 "시장집중이 확산된다는" 것만을 지적했다.

이것이 명확하게 말해주는 것은, 다국적기업들이 규모의 이점을 가질 뿐 아니라, "더 큰..."를 가지므로 토착기업들이 도산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또한 "어떠한 토착생산자도 ...할 수 없는" 새로운 생산품을 도입할 수도 있다. 이는 NAFTA 적용 이래로 멕시코에서 발생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측정치에 따르면, 20000-28000개의 멕시코 중소기업들은 외국다국적기업, 특히 미국기업들과의 경쟁으로 인하여 도산하였다.

실업 증가에 이어, 일자리를 가진 자마저 임금을 삭감당했다. 페소화의 평가절하 이전에도, 멕시코 노동자들의 수입은 벌써 12% 삭감되었다. 이 평가절하 이래로, 실질임금은 1980년 수준의 반이었다. 4천만명이 일당 5\$ 이하로 살아갔고, 실업자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가진 자들의 수는 배가되었다. 멕시코 자율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1993년 NAFTA 적용 전의 1/3에서, 적용 후 1/2이 넘는 인구가 "극도의 빈곤"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NAFTA는 미국에도 적어도 400,000의 일자리를 이 협정의 직접적인 결과로서 잃게 함으로써 손해를 가했다. 미국의 對멕시코 통상이윤은 재정적자로 변형되었다. NAFTA가 체결되면 미국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각별히 약속했던 미국 다국적 기업의 85%는 사실 멕시코로 이전하기 위해 수천의 피고용인들을 해고했다. 관련된 삼국--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는? 실질 평균임금이 1993년 이래로 줄어들어왔다.

미국의 사용자들은 또한 노조의 우위에 서기 위해 탈지역화, 또는 단지 그 위협을 사용해왔다. NAFTA의 사무국에 고용되어 있는 케이트 브로펜브렌너 교수는, 멕시코로의 탈지역화가 NAFTA의 적용 이래 세배가 되었다고 한다. 그녀에 의하면, NAFTA는 "...를 초래했기"

때문에 단결권을 잠식하고 있다. 떠나겠다는 협박은 또한 임금의 "자발적" 삭감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본이 이동성이 있다면, 노동은 대개 이동성이 없기에 자본이동의 완전한 자유화는 이러한 유형의 남용을 10배로 증가시킬 것이다. MAI 체제 하에서, 재화와 자본의 유통은 모든 사회, 정치적 통제에서 벗어나 강화될 것인데, 이에 반면 빈부국 간의 노동력의 이동장벽은 오늘날보다 훨씬 커질 것이다.

국제적 경쟁의 강화는 "밑바닥으로의 경주", 즉 세계의 모든 노동자들을 서로와 경쟁시키는 하강 나선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밑바닥"이란 월급이 약 10-20\$이고 노동시장이 "탄력적"이며 단결권이 존재하지 않는 특정국의 노동자들의 準노예상태이다. "세계노동시장"이 통상적 의미에서의 "시장"과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는 수요와 공급 뿐 아니라 국가적 통제력의 폭넓은 개입에 의해서도 조절된다. (중국, 인도네시아 등)

이 때문에, 우리가 마치 19세기에 살았던 것처럼, 국가들 간의 경쟁과 리카르도식 "비교우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비교우위"란 경제적인 것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현재의 투자체제 하에서는, 자본에 가장 매력적이고 노동에 가장 구속적인 조건을 그들의 국민에게 강요할 수 있는 국가들에 호의적이다.

예컨대, 오늘날의 세계에는 "투자자는 ..."인 700개 이상의 "자유무역지대"가 존재한다. MAI의 물 하에서, 특히 남부에서는 이러한 무권리 지대는 새로운 정당화 논리를, 기준을 창출할 것이다. 자본이 순환할 자유는 철저히 지되, 인민이 순환할 자유는 철저히 제한될 것이다.

3. 환경에 대한 공격

초국적 자본의 철저한 자유는 환경을 무겁게 짓누르는 위험이기도 하다. 여기서 다시, "MAI의 축소판"으로서의 NAFTA는 우리에게 값진 단서를 제공한다. 또한 MAI적 질서이기도 할 NAFTA의 질서에 상응하여, 미국 회사인 ETHYL은 석유에 자사에 의해 제조되는 첨가제 MMT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1997년 4월 표결된) 법안을 철회하도록 강요하기 위해, 2억 5000만\$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다. 그러나 NAFTA의 전면적 적용 이래,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회사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구를 압도하는 놀라운 힘을 쥐게 되었다. 그들의 의견으로 볼 때 한 정부가 "通商에 대한 불법적인 장벽"을 수립할 것 같으면, 일개 회사가 제소할 수도 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ETHYL이 "수용..."을 당했다고 주장하게 된 것인데, 이 경우 "소유권"이란 일실수익이다.

캐나다 연방정부는 MMT에 대한 금지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건을 법정 외에서 해결하기 위해 1300만\$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함으로써, 이 회사를 지지하는 판단을 내렸다. 캐나다의 여야는 이러한 조치를 "건강보호와 환경에 대한 시장의 힘의 승리"라고 불렀다. 캐나다 정부는 MMT의 해로움을 입증하는 30명이 넘는 이들의 과학적 연구에 의한 증거를 무시하는 길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ETHYL이 제기한 소송에서 질 것이 뻔했기 때문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결정은 MAI의 질서 하에서 가능해질 법적 조치와 공갈을 미리 엿보게 해준다. 공해업자들에게 지불할 것이 강요될 것이며, 그들의 계속적인 공해유발이 방지될 것이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리치몬드 소재한 ETHYL社는 캐나다 정부와 캐나다 의회에 의해 제안된 법을

거부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또다른 예로서, 미국 폐기물 처리 회사인 Metal Clad社는 멕시코 정부에게 9천만\$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산 루이스 포토시 주지사는 지역주민의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폐기물 처리 공장의 건설을 금지해왔다. 그는 후에 그 장소를 생태보호지역의 일환으로 분류했다. Metal Clad는 그것이 가장된 수용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공장 件에 대해 열허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있다.

미국에서 환경에 특히 해로운 활동을 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시작된 "소유권" 운동은 한 회사가 환경에 대한 규제에 순응하도록 강요받을 때마다 재정적인 보상을 얻고자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에 대한 NAFTA의 전면적 적용 이래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관찰될 수 있다:

공해로 악명높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접경지대("마킬라도라")를 재활하기 위해 약속된 돈의 1%만이 지불되었다. 미국을 향해 멕시코 국경을 넘는 모든 화물자동차의 1%미만만이 보건감찰관에 의해 통제된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불법적인 살충제로 뒤덮인 과일, 채소의 양과 다른 위험물의 수입량도 크게 늘었다. 이 접경지대는 코카인 등 불법적인 약물에 대한 주된 유통지점 중 하나이다.

간염, 결핵, 선천성 기형의 증가가 이 지역에서는 그칠 줄을 모르는데, 루푸스 발생률은 세계 최고이다. 독물과 쓰레기는 접경 양측의 식수를 오염시킨다.

MAI는 세계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재생산할 것이다.

이는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특히 농림광어업의 천연자원을 착취할 더 큰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분쟁조정 패널에 관한 MAI 조항은 NAFTA와 WTO의 조항과 유사하나, "생산의 절차와 방법(PMP)"에 기인한 상품간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들이 명시적으로 환경을 파괴하고 기초적인 인권, 노동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PMP는 무역장벽을 형성할 수 없다.

어떤 PMP는 다자간 환경협정(예컨대 오존고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위협받는 종에 대한 CITES 협약, 유독물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조항을 위반한다. WTO 패널의 결정은 그들을 고려하지 않는데, 이는 통상권이 자연보호와 충돌할 때마다 실증되는 바이다.

MAI 협상자들은 노동권의 고려나 자연보호보다는 다국적 기업의 요구에 더욱 민감하다는 것을 드러내 왔다. 미국 국제 비즈니스 위원회 의장은 관련된 미국인들에게 전언하기를, "우리는..."이라고 MAI에 대해 기술했다.

4. 문화에 대한 공격

국제문화시장은 5대 재벌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Time-Warner(250억\$), Disney(240억\$), Bertelsmann(150억\$), Viacom(130억\$), NewsCorporation(머독, 100억\$). 그들의 활동은 신문, 잡지, 서적, 라디오, TV, 회사,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등을 포괄한다. 특히 유럽 시청각 시장이 추구대상이다. 1995년 미국에 대해서도 63억\$를 벌었고, 헐리웃의 수출의 80%가 유럽으로

갔으며 60%의 유럽 TV 프로그램은 미국 원산이다. MAI의 선동가들은 그들이 훨씬 잘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내국민대우 조항(Clause on National Treatment)을 통해, 국가 또는 유럽적 차원에서의 예술 지원 기금은 미국 영화를 위해서도 쓰일 것이다. 문화 저작의 국내 생산에 있어 더이상 특혜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문화의 중요 영역(예컨대, 국가교육과 국가유산의 유지, 국립박물관 등)이 결코 민간 투자에 개방된 적이 없는 수많은 국가들, 특히 유럽국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기엔 광대한 잠재적 시장이 존재한다. 교육은 특히 학생을 "고객"으로 보고 수업을 "생산물"로 보는 다국적기업에 의해 역동적으로 추구되는 시장인 OECD 국가들의 수만 달러의 대표적인 국가지출 대상이다.

유럽 산업가들의 원탁회의(대륙의 최대 다국적 기업들의 45인 대표)는 사기업들을 이러한 시장으로 보내는 데에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생산물"을 "승리자"에게 매각할 것이고, 그동안 나머지 교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의 일부를 결코 형성할 수 없을 것이고, 그의 사회로부터의 전반적인 배제가 나머지 교사를 봉직시킬 그러한 한도로까지 증가할 것이다." 그리하여 MAI는, 모든 시민의 권리를 오직 지불하는 고객들에게만 열려있는 시장으로 제한시킬 뿐 아니라, 또한 고의적으로 사회적 배제의 매커니즘을 강화할 것이다.

프랑스를 포함한 몇몇 국가들이 MAI 협상 기간 동안 제시한 "문화적 예외"에 대한 요구는 명백히 불충분하다. 한편으로 "현상동결(Standstill)"조항과 "점진적 철회(Rollback)"조항은 모든 예외들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프랑스의 전직 문화부장관이자 외무위원회위원장인 자크 랑이 말하듯, "(MAI에 의해 야기될) 위험은 오늘날 문화 뿐 아니라 모든 인간 활동을 무겁게 짓누른다."

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

A. 불법적이고 마피아적인 경제

모든 사회, 정치적 통제를 벗어난 직접 또는 금융 투자의 무정부주의적 성장은 환경의 파괴에 기여해왔다. 우리는 또한 자본유통의 탈규제화가 (그 충격을 자세히 측정하긴 어려워도) 비슷비슷하고 마피아적인 경제를 선호한다는 것도 안다.

어쨌든, 이는 이러한 순환을 훨씬 더 자유화함으로써 촉진되는 상황의 유형이다. 러시아 연방의 내무부 장관에 따르면, 약 5700명의 마피아 갱들이 국가 금융 부문의 70%를 장악하고 있다. 이탈리아 마피아의 부동산은 적어도 1000억\$의 가치가 있으며 그 연간 산출량은 500억\$이다. 인터폴은 경제범죄에 의해 유럽국가들에 초래되는 손해를 5000억\$로 추산한다.

한 조세 피난처에서 다른 피난처로의 엄청난 속도의 돈의 순환은 오늘날 "불처벌이란 사실상 사기꾼에게 보장된 것이다. (자금추적이 설사) 가능해질 것이라도, 이들 각 나라들의 법원이 이 돈의 경로를 찾는 데에 수년이 걸릴 것이다."

유럽의 사법기관들은 그리하여 조직화된 경제범죄에 맞서 싸울 수단을 정부에 요구하는 청원을 하고 있다.

NAFTA가 멕시코-미국 간 마약의 이동과 유통을 촉진했다는 것은 의심할 바 없는 사실이다. 조세 피난처의 존재는 돈과 마약의 세탁을 촉진한다. 모든 개인을 다른 이들과의 경쟁

에 두고 임금을 깎음으로써 일반적 물로 자리잡힌 불안정성이 범죄경제에 대한 지원을 쉽게 해주고 있다. 세계의 많은 영역들은 오늘날 법의 테두리밖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국가적 통제로부터 보호되어 있다. 공무원과 장관들은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자에게 자신을 팔고 있다. 누구도 마피아 경제의 총산출량을 알지 못한다. 세계 마약 거래 하나만도 적어도 1년 판매기준으로 4000억\$에 달하는데, 이에 다른 형태의 불법거래(무기, 매춘, 장기매매, 위협받는 種)로부터의 돈이 가산되어야 한다.

B. 민주주의,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우리2는 북구의 정부가 남구의 정부처럼 종종 순전히 경제적인 이해 때문에, 즉 (최근의 분석에서 드러나듯) 다국적 기업의 나라없는 자들 때문에 시민을 해치며 자신의 권위를 포기해왔다는 데 주목한다.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고무받은, 지난 20년에 걸친 민영화의 물결 (이는 경제학보다는 오히려 이데올로기에 의해 추동되었는데)은 경제적, 사회적 삶에 있어서의 국가적 간섭의 중요성을 감소시켜왔다.

고의적이건 아니건, 멕시코, 러시아, 아시아 공황의 결과 중 하나는 IMF의 철칙 하에서 수행된 민영화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UN대학의 부총장이 말하듯, 아시아인들은 이러한 민영화에 대해 "아시아의 문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되었다"라는 경우로 보는 시각을 공유한다. 환율의 평가절하와 토착 경제 기구의 시장가치의 무제한적 폭락과 함께, 외국 회사들은 "All Must Go"의 대규모 세일에 돌입하였다.

신자유주의의 주목적 중의 하나는 간단히 말해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 특히 그들을 민영화시킴으로써 공공 서비스를 공급할 국가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참으로 우리가 되새겨야 할 것은 정부는 모든 시민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반면, 기업 자체는 오직 그들의 주주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것인데, 사실 이조차(기업이 주주에 책임진다는 것조차) 사실이 아니다. 그러므로, 교통, 급수 등과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그들의 질이 떨어지고, 그들의 경영자들(종종 전과 같은 자들이겠으나)은 엄청난 봉급 향상을 누리며, 가장 빼앗긴 사람들과 지역은 더욱 나쁘게 대우받는다.

아울러 민영화는 "과도하게" 여겨지는 노조의 힘을 공격하는 수단이다. 영국에서는, 1979-94년 사이에 이뤄진 민영화가 (대부분이 노조로 조직화되어 있던) 공공부문에서 200만이 넘는 일자리의 감소(29%의 감소)로 귀결되었다. 공적, 사적 영역을 합산한 총 일자리 감소(1979-1994년)는 7%였다.

총체적 민영화의 편파성에 관해 말하자면, MAI는 무엇보다도 특정한 범주의 인구 또는 특정 지역에 대한 용역의 공급에 대해 (순전히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유지 불가능한) 특혜적 요금을 책정할 것이다. 다시말해 MAI는 공적 급부에 대한 시민의 평등권을 부정할 것이다. 미국에서 보듯이, 이는 사회 보장에 대해서도 동일할 것인데, 미국에서는 의료보험 없는 시민의 수가 현재 4000만을 넘어선다.

자본의 통제받지 않는 흐름은 민주주의에 다른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국가는 더 이상 그의 환율을 고정할 수 없으며, 환율은 오직 시장에 의존한다. 국가는 또한 더 이상 "국내" 또는 해외의 자본의 유입과 유출을 제어할 수 없다. 시장은 매일같이 정부의 정책을 승인 또는

부인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다. 어떠한 계속되는 "협상"도 존재하지 않으며, 시장의 판단에 항의란 없다. 이 반면에, 시민의 투표는 큰 비중을 지니지 않는다.

그 시민에게 어떤 평등을 보장해주고 그들을 시장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줄, 여전히 국가가 지닌 주된 수단은 조세 제도를 통한 재분배이다. 그러나 자본은, 항상 더 이동성이 강해졌기에, 과세를 회피할 것이며 특히 다국적 기업은 그들이 고율로 과세되어야 할 때에도 이익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기술에 있어 노련한 대가들이다. 우리는 후에 이런 꼴로 돌아갈 것이다.

이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는, 자본에 대한 과세는 현재 국가 재정수익의 35%만 산출하고 있으며, 1980년의 50%와 대비된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에 대한 과세는 유럽에서 동시에 증가해왔고, 이제 국가에 40%가 넘는 조세수입(1980의 35%에 대비)을 공급하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수입 중 기업 이윤에 대한 과세의 비율은 17%도 채 되지 않는다.

이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민중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노동에 대해 더욱더 과세할수록 종업원의 소비는 줄고, 생산도 줄어, 간접적으로 고용도 준다. 경제학자들은 "고용 비용을 늘리는 모든 조세는 고용을 줄인다."라고 말하며, 이는 논리적이다.

그리하여 다국적 기업들은 누구보다도 훨씬 더 쉽게 탈세할 수 있는 한편으로, 타인이 (대신) 그 조세를 지불해줌으로써 이득을 취한다. 국가의 경제 문제에 대한 관여는 점점더 산업-금융 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 되고 있다? 납세자의 돈으로? "실패하기에는 너무 커진" 것으로 여겨진다. (프랑스의 리용은행, 미국의 크라이슬러 또는 저축과 대부자금, 일본 은행들)

아울러 국가는 스스로에게 공급할 의향이 없는 다국적 기업에게 인프라를 공급해 주도록 요구받는다(그들의 종업원을 훈련시키기 위한 학교, 그들이 노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와 운송 등).

북구의 납세자에 의해 지불되는 조세는, 멕시코, 러시아, 태국 등의 "카지노"에서 도박하기로 한 민간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를 구하기 위해 필요한 수십억 달러를 IMF에 공급해준다. 총체적인 아시아 구원 자금은 적어도 1200억\$에 달할 것인데, 정부에 의해 지불되는 것인가? 다시말해 시민들에 의해? 아시아의 수많은 시민들을 실업과 고통에 빠뜨린 채로 놔둔 동안 유럽과 미국의 시민들에 의해?

원칙

I.협약은 내외국의 모든 투자자와 모든 투자는 민중의 권리를 존중해주고, 인권을 중심으로 남녀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의 접근의 평등성을 증진시키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환경을 보호해야만 한다.

II.협약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국제적 권리를 실현시켜주는 선언들로부터 착상을 얻은 것이다.

◎국제 연합 인권 선언 [1948년]

◎국제 연합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과 시민,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66년]

◎국제 연합의 국가 경제 의무에 관한 선언 [1974년]

◎몬트리올의 다른 협의서들과 런던, 바젤, 교토 협약, 해양권역 간의 환경에 관한 다자간 협약

◎국제노동 기관의 기본 협약

◎리우 데 자네이루(환경과 발전), 코펜하겐(사회 발전), 베이징(여성의 권리와 발전), 로마(생존 보장)에서 이루어진 다른 회의사이에서 국제 협약에 의해서 체결된 수많은 회의의 최종 선언

III.그 문서들은 다양한 영역에서 권리들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의 권리를 명확하게 실현시키고자 한다.

◎노동권은 고용될 권리, 합당한 봉급을 받을 권리, 건강과 안전을 존중해주는 환경조건에서 일할 권리,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와 관련이 있다.

◎사회적 권리는 공공 교육, 공공건강, 사회적 최소한의 것과 재해 수당금, 퇴직금, 여성, 아이, 노인 혹은 유아의 특유한 필요와 관련이 있다.

◎환경권은 자연자원-농작물, 공간, 생물을 포함하여-의 보호와 관련이 있다. 해양, 토양, 오존층, 기상의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

◎문화적 권리는 언어와 자아 정체성과 가치와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IV.협약은 북반구에서만 아니라 남반구에서 모든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화된 국가와 저개발 국가들에서. 그것은 남반구의 조직 기구들과 북반구의 다른 국가들을 선동하고 그 본문에 동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보다 큰 구상에 기여한다.

V.협약은 다자간 투자 협정과 MAI와 같은 의도에서 작성된 다른 모든 협정 문서들-OECD에서 WTO에서, IMF 등 "무역 동반자(Partenariat Transatlantique)"혹은 다른 모든 형태의 포럼안에서 진행되는-의 파기를 지향한다. 그것은 민주와 개인의 서비스에 관해 투자와 부에 관한 국제 협약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는 역할을 지녀야 한다.

VI.협약은 실제적인 기준과 규제와 같은 신자유주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확인에서 벗어나는 수단으로 MAI에 대한 "대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환경과 인간의 많은 부분에 대한 선입견을 낳을 수 있다. 그것은 경제적이고, 역사적이고, 법적이고 사회적인 망상이다. 현재의 협약은 신자유주의라는 장치에 대해서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암이 존재하

지 않는다면 암에 대한 "대안"을 누가 제시하겠는가?

VII.협약은 제대로 평가되고 운영되는 투자가 민주와 시민의 삶에 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임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된 규정의 투명성에 대한, 그리고 강제수용시의 피해에 관한 공정한 다른 특권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들은 동시에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고용에 관한 의무를 지닌다. 특히 각 국가들은 경제계획, 사회법, 지역 발전을 취사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VIII.협약은 MAI와 마찬가지로 전세계적이고 강제적이고 미리 예견, 용인, 적용 가능한 규제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국내 그리고 국제적인 계획을 실행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사회운동가, 노동운동가, 환경운동가, 문화운동가, 연대할 수 있는 이들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와 같이 모인 가치있는 모여진 노력들이 공공의 힘의 일부를 촉진하고 그에 대한 답을 기다리고 있다.

제안과 권고

"누가 시민인가? 시민은 지배하고 지배받을 수 있는 이이다."

-아리스토텔레스

I.합리성과 협약

이전에 존재하는 관점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라는 도그마로부터 기원한 자유는 인간이란 존재를 노예상태로 만들고 자연의 파괴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파괴로 명확하게 이끈다.

그 "자유"는 최소한 비탄의 바다에서 번영하는 (군국 정책의 강력한 보호아래에서) 몇몇 작은 마을조차 창조해낼 수가 없다. 그러나, 신 자유주의 선언은 널리 퍼져서 진부해지기까지 했다. 그것은 사회 기구에 가능한 독특한 계획을 적용하려고 한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보다 평등을 진척시키고 민주주의를 보장시키는 수단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인도적 급부와 환경급부에 투자하도록 하는 틀을 정의하도록 결정했다.

왜 일반 시민들이 그와 같은 일에 전념해야만 하는가?

1.국가의 포기

OECD의 수많은 국가들이 단지 그와 같이 MAI에 서명하기를 요구할 뿐이다. 그러나

MAI는 오늘날 정부에 의해 투자자들에게 부과될 수 있는 “결과적 의무”들을 철폐하면서 국가 기구의 한계를 결정한다. 규정들을 살펴보면 현상 동결(Standstill)과 점진적 철폐(Rollback)는 정부가 더 이상 새로운 법에 대해서 투표할 수 없고 MAI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평가되는 법들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의 투자자들에게 가장 좋은 대우에 역설적이게도 동의하기에 이르른다.(예를 들어 다른 해결책의 체제에 대한 접근 아래에서)

만일 MAI 혹은 비슷한 협약이 승인된다면, 민주주의는 여분의, 제한된 공간에만 한정될 수밖에 없다. 通商은 정치에 대해 분명히 한걸음을 앞서 있다. 그것은 환경, 물, 에너지와 같은 필수적인 영역에서의 정책적 통제, 기후 혹은 살 수 있는 공간의 보호를 위해서이다. MAI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서 영원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다양한 전체주의와 관계 있다.⁷⁶⁾

왜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도 못하면서 국가가 MAI협약에 대해서 그들의 자신의 안 좋은 위치를 받아들이면서까지 협상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주권을 거부하는 협정을 고찰하고자 맑스를 인용하자면 “현대 국가의 힘은 전적으로 부르주아 계급의 사무를 관리하는 역할만 한다”는 것을 선언한 것처럼 자동적으로 궁핍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다국적 기업”에 의해 “부르주아 계급”이 단지 대체될 뿐인가?⁷⁷⁾

2. 기존의 국제 기구에 대한 신뢰 부족

우리는 민족국가의 몰락을 “사실상”의 정부의 법령의 개폐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우리들은 이미 IMF와 WTO의 행동에 환상을 가졌었다. 그들의 간섭은 경제의 보다 많은 영역에서 자유화라는 의미 속에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다. MAI는 국가간 투자영역의 지배 속에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한다. 국제기구의 역할은 불투명하고 반 민주적이다. 그 기구들 중 어떤 것도 시민들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

3. 다국적 기업 “윤리 강령”의 무력, 부적합, 다른 것들에 대한 무시

ETN의 “자율 규제”라는 관념은 슬책에 불과하다. 회사와 관련된 것 중에 국제적인 계획에서 절대적인 법률상의 공백이 존재한다. 그 것에 관한 국제적인 법률은 비록 그것들 중 많은 부분이 국가의 대부분보다 경제적으로 더 중요할지라도 단지 민족국가에만 적용될 뿐이지

76의원은 4-5년마다 선출된다. 벨기에 의회의 생태주의 집단의 제라드 램버트는 “다자간 협정(MAI)” 1998년 4월 12일 조정
77웁스&앵겔스, 공산당 선언, 제 1장, 사회편, 1976년 파리, p34

교역적인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⁷⁸⁾

회사는 투명하지 않으며 시민들을 어떠한 경우에도 고려하지 않는다. MAI 본문 자체가 OECD에 의한 행동지침은 강제적이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은 비용의 정당한 부분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몇개의 구속을 강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거부한다. 다국적 기업은 국가의 정치와 국제적인 기구를 왜곡하기 위한 로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출자한다. 로비는 GATT, WTO, 유럽연합 혹은 MAI와 같은 협상의 너머에 어디에나 존재한다.⁷⁹⁾

4. 시민들의 요구와 제안을 받기 위한 비판을 할 시점

다양하게 많이 나타나는 MAI에 반대하는 다발적인 운동은 국내적 세계적인 계획에 따른 것대로 평가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먼저 제안하고 촉구하면서 새로운 조약의 일각에서 형성될 것이다.

II. 일반 조항

일정 영역에서 일반적이든 특수적이든 다음과 같은 모든 것들은 지침적인 것이지만 한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공동체에 의해 승인된 현존하는 협정에 대부분에 적용된다. 그것은 이미 고안된 것들을 존중할 필요성에 관해서 촉구하는 새로운 요소들의 제안과 무관하다. 우리는 MAI가 권리와 국제적인 협약의 대해서 50년 동안 영향을 미치도록 방지할 수 없다.⁸⁰⁾

1. 모든 이들은 그 자기 결정권을 지니고 있다.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결정하고 자신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확인할 수 있다.⁸¹⁾

78세계의 100여개의 중요한 경제주체 중에 51개가 다국적 기업이며 단지 49개만이 국가이다.(PNB)

79유럽 STN의 45 PDG를 포함하는 유럽공업국가 테이블 로비의 보다 많은 영향을 알기 위해서는 유럽관찰 협의회 [CRO] 를 참조하라. 유럽: 유럽 연합과 산업기구 사이의 위험한 연결 PO Box 92066, 1090 암스테르담, Pays Bas, 1997. 국제 교역 위원회와 지속 발전한 발전을 위한 세계 사무 회의, 일본 가이 단렌, 국제 사무를 위한 미국 위원회 등. 예를 들어 지국을 통해서 국내적으로 국제적으로 보다 많이 연대하고 있다. 제약 마크를 단지 인정하고 제약 생산품을 제외하기 위해서 OMS를 공격하는 제약 산업의 국제적 연결은 “일반적”이라고 말해진다.

80 위의 “원칙” 부분에서 검토했던 대부분의 조항 이외에 고용을 증진시키고 실직에 대한 보호장치와 관련된 국제적인 권리 문서들과 협약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원래 거주하던 이들의 권리, 전통유산과 자연 자원의 보호, 망명자의 지위, 여성, 장애인, 이주자, 어린이,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이들의 권리들. 녹색당의 캐나다 대표 존 루소는 그것에 관한 엄청난 수를 조사를 하였다. 웹 사이트 mai-not@essentiel.org, 윤리, 공평 그리고 생태에 관한 시민 협약

2. 자본, 재화, 용역이 일반적인 규제 속에서 자유스럽게 이동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들이 일반적인 규제 속에서 그들 스스로 이동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국가는 자본과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MAI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평등 조항”을 불공정한 경제 행위자에게 적용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게 된다. 각 정부들은 특히 지역 혹은 지방 기업들을 고려해서 그들의 영역에서 경제적 활성화를 위해서 합의하는 방법을 결정한다.

4. 정부와 마찬가지로 초국적 기업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두배로 촉구할 것이 요구되어진다. 다국적 기업의 모체는 각 지부의 구성에 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투자의 책임은 주주에 대해서만 아니라 각 개인들과 지사가 존재하는 공동체에 대해서도 져야 한다. 각 나라에서 시민들이 그 책임의 범위와 정확한 이동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5. 개인의 권리와 환경,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규정들은 최상한선이 아닌 최하한선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투자자들은 법과 함께 발전해나가야 하며 그들의 자유 혹은 이윤을 획득하는 과정에서도 사회보장·환경보호의 테두리내에서의 발전을 넘어설 수 없다.

6. 모든 국내 그리고 해외 투자자들은 금지와 경고 원칙들-공공 보건 혹은 환경에 관해서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산품 혹은 선행했던 유해성과 관련되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무독성이 입증될 때까지는 그 물품 사용을 삼가야 한다-을 준수한다.

7. 만일 예방 원칙들을 충분히 보장된다면, 모든 국내 혹은 해외 투자자들은 오염자 부담 원칙을 준수해야만 한다.⁸²⁾

8. 환경에 관한 다자간 협약의 조항 [AME; 예를 들어, 다양한 환경, 오존층에 대한 몬트리올 규정들, 유독 폐기물의 움직임에 대한 바젤 협약, 위협적인 공간의 상업에 관한 CITES 등] 은 국내와 해외 투자자들에게 강제적이다. AME의 목적은 지구의 자연적인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증진시키고 미래 세대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국내 혹은 국제적인 다른 협약, 법률, 규정들-투자와 통상에 관한 협약들에 관한 것들을 포함하여-에 관

81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련된 국제 연합 조약 1장(1996)

82 캐나다 국제 변호사에 따르면 MAI 원칙은 “오염자가 지불해야 한다”가 아니라 납세한 세금을 가지고서 “오염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ETHYL 논쟁에서 확인된 제안. Ruth Abramson에서 인용한 베리 아블레통 변호사 “오염자에게 지불해야 되는가?” Maclean's Weekly Magazine [캐나다], 1997년 9월 1일

해서 상위에 존재한다.

9. 모든 정부는 그들의 자연, 생물, 화석자원의 개발, 보존, 관리에 관련된 지배권을 실행한다. 정부는 특히 민중들의 식수와 안전성과 발전에 대해서 확신시켜 줄 의무를 가지고 있다.

10.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에 의해 결정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자의 일반적인 지배는 설립권이 아닌 설립허가권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외국투자자들이 적절한 목표-민주적인 선거라는 수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원칙적으로 승인된-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와 권리를 지니고 있다. 정부의 협약은 투자자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어떠한 경제적 행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다.

11. 모든 정부는 투자에 관련된 규정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하고 내국인이든 외국인 이든지 간에 모든 투자자들에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야만 한다. 모든 투자자들에게 국가 기준-노동권과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보호와 관련된-이 먼저 고지되어야 하고 투자자들은 설립조건으로서 이를 준수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12. 어떠한 국가도 마련된 기준들-노동과 공공 건강, 사회 또는 환경의 보호와 관련된-의 무력화를 통해 국내의 그리고 해외의 투자자들을 유치하거나 유치하려고 할 수 없다. 국내 혹은 외국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과세, 오염, 자연 자원의 보호 등 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일시적 혹은 명확한 수단들을 유예시켜서는 안된다.

13. 모든 정부는 그들의 선택의 “세이프가드”를 설치하고 혹은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결정된 지급유예를 한 국가들에서 새로운 모든 금융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촉진하면서 금융투기의 영향을 막으면서 국가를 보호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다.

14. 정부에 의해서 지도된 징수는 “공정하고 선행적인 보상금”-프랑스와 같은 수많은 나라들의 규제들을 사전에 알려주는-의 지불을 수반한다. 징수는 MAI의 본문 안에서 지칭했던 이득과 관련되어 “간접적” 혹은 “미래적”이라고 말을 하고, 그와 같은 보상금을 동반하지 않으며 2개의 집단의 협상 혹은 권위 있는 법원의 결정에 순종하는 것이다.⁸³⁾

15. 모든 정부는 투자자들에 대해서 제소를 할 수 있다. 정부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은 똑같이 제소할 수 있다. 그 권리는 똑같은 법조문 앞에서 제소를 한

83 ETHYL와 캐나다 정부 사이의 소송은 “간접 과세” 혹은 “미래”의 관념의 기초를 두었다. 그것은 메탈 끌레드과 멕시코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MAI의 본문 상에서는, 그것은 “징수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와 관련이 있다. “징수에 준하는 양”

투자자들에 의해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시민적 권리(지방 혹은 지역의 연합, 집합) 또한 동반한다.

그것이 국가, 투자자 혹은 시민들 집합에 의해서 매개된 것과 다른 점은 원고에 의해서 선임된 판사, 피고에 의해 선임된 판사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선임된 의장으로 구성된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점인가? 판사를 선임하는 것은 헤이그 법정인가? 다른 점은 그 선임의 고민과정이 공개적이라는 점이다.

16. 투자자의 어떤 지점(支店)도 본점이 제3국(실제적 예: 리비아, 쿠바, 이란, 버마)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투자때문에 행정부에 의해 승인될 수 없다. 항상, 각 정부는 그러한 동기로 새로운 투자를 거절할 수 있는 자유가 남겨져 있다.

17. 모든 집합 지역은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지자를 선택하고 지방회사에 호의를 베푸는데 자유롭다.

18. 모든 정부는 시행된 이후의 기간에는 투자에 관한 쌍방 혹은 다자간 협약을 포고할 수 있다. 포고할 날짜를 고려하는 6개월의 예고기간은 효과가 발휘되기 전에 고지되어야만 한다.

III. 특별조항

1. 공권에 관련된 조항

MAI는 투자를 제한, 금지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어떤 의무를 부가하는 공권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없애고자 한다. MAI가 목표하는 실질적인 제한과 금지는 UNCTAD에 의해 창안되었다. 그것은 서로 중첩되는 3가지 원칙이다.⁸⁴⁾

- ◎입국허가와 설립에 관한 조치
- ◎소유권과 통제에 관련된 조치
- ◎조정에 관련된 조치

MAI와는 반대로, 그 협약은 공권에 의해 부과된 제한과 금지-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제정하고, 관련 국가의 경제에 투자자들이 설립 또는 참여하기 전부터 알고있는-에 관한 합법성을 확인하고 있다.

84) 1996년 세계투자보고서(World Investment Report 1996)에 정확하고 완벽한 목록이 있다.

A. 입국허가와 설립에 관한 조치

국가는 전통적으로 국가 영역에 관한 인적인 출입, 재화와 용역과 회사의 출입에 관한 통제를 실행했다. 그러나 이후 WTO는 재화와 용역의 출입에 관한 통제에 관한 모든 능력을 실질적으로 없앴다. MAI는 자본을 위해서 그와 같은 것을 하고자 한다. 이제 드라콘(역주: 아테네의 입법자)인 사람들의 출입과 이동에 관한 통제만이 남아있다.

공권은 만일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몇몇 영역에는 국가만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 (예를 들어 농업적인 영역, 지적인 혹은 문화적인 영역, 지정된 자연 자원, 전략적이고 민감한 산업)
- ◎경제적인 부분에서 외부 참여의 제한.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사기업 단위로. (예를 들어 민영화, 재매매 혹은 합병)
- ◎초기 자본에서 일정정도의 출자 요구와 이익에 대한 수수료-투자자와 함께 서명한 공동협약에 의해서 그 비율이 결정된 그 순간부터-징수를 통한 국가 영역에 관한 재투자 요구
- ◎금융투자와 관련이 있을 경우 중앙은행에 보증금 예탁 요구.

B. 소유권과 통제권에 관련된 조치

공권은 만일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외부투자자에게 국영 기업과 "조인트벤처"의 요구
- ◎지역(locale)은행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자본의 총액의 제한.
- ◎운영 위원회에 여러 가지의 상표의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리 부여.
- ◎투자자들이 투자한 지역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이윤의 재투자에 관한 수수료 고정 [cf. 미국의 공동체 재투자법]

C. 조절에 관한 기준

공권은 만일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 ◎특히 기술 이동과 지역적 성과물 그리고 지역 출자금, 지역의 인적 공급과 관련된 "성과에 관한 규제들"의 제정
- ◎특히 무역에서 크게 적자 발생시 수출 쿼터 고정과 수입 혹은 자본의 재이탈 제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사기업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공공 서비스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전에 결정된 정가에 모든 시민들에게 관련된 지역에서 그들의 주거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재화나 용역의 공급 강제

2. 환경에 관련된 조항

조심, 예방, 오염자 부담원칙-모든 국내 혹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적용될-에 관한 구조적인 고찰을 하는 것 이외에, 공권은 만일 필요하다고 여긴다면 다음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보호조치로서 아무런 보상금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오염방지법을 무력화시키는 국내 혹은 외국의 모든 조작 방지.

◎투자자 혹은 상인들에게 보다 사회적인 생산 방법과 수단의 기반보다는 환경에 대한 우선적 고려 요구

◎유전자 조작에 기초한 그 지역 하에서의 모든 실험 거부. 제공한 상품 혹은 유전자 조작을 내포하고 있는 약품의 모든 수입 거부.

◎잠재적 투자집단에게 우선적으로 기간투자, 제시된 활동으로 인한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연구 요구. 그 후에 만일 실제적인 영향이 예상된 영향과 현저하게 다를 경우 무보상 수용 동기 부여

◎물품의 성분 속에 재활용물에 대한 일정 정도의 비율 요구. 생산자들이 수거와 최종적인 생산품의 재활용 담당. 포장과 관련된 기준 부과.

일반적으로 정부는 제조 환경과 다양한 물품의 사용을 고려하여서 모든 가격을 확인하고 그 가격이 국제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련된 조항

투자에 관한 모든 협약은 ILO의 적어도 7개의 주요한 협약이라도 강제적인 방법으로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 그 7개는 이미 매우 많은 국가에 의해 비준되었다. 그 사실은 새로운 조치들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전에 제정된 규칙들을 존중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가장 중요하게 관련이 있는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다.

◎노조의 자유와 노조권의 보호 [1948년에 120국에 의해 비준된 협약 87번]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1949년 139개국에 의해 비준된 협약 98번]

주의: 그 두 개 협약은 모든 노조활동에 관해서 차별없는 조건들을 규정하고 있다.

◎강제 노역과 숙박-전쟁이나 자연재해의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하게 관리되어 부가된 노

동의 경우에는 모든 강제 노역을 금지한다. [1930년에 145개국에 비준한 협약29번]

◎정치적인 활동, 종교적인 이유 혹은 노조활동-특히 파업참여를 이유로 하는-을 이유로 하는 강제적인 조치 혹은 형벌로서의 강제노역의 폐지 [1957년에 128개국에 비준한 협약 105번]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임금과 그 밖의 혜택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 [1951년 137개국에 비준한 협약100번]

◎인종, 피부색, 성, 종교, 정치적인 견해 혹은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에 대한 차별 철폐와 고용에 있어서 기회와 대우, 더 나아가 전문적인 면에 대한 평등 [1958년 130국이 비준한 협약

111번]

◎최소 연령/유아 노동: 각 국가의 사회적 체제의 발전에 따라서 위험한 작업의 최소 연령 18세: 위험하지 않은 일에 대한 취업 연령 14-15세 [1973년에 60개국에 비준한 협약 138번]

특히 노조는 모든 국가가 똑같이 산업별, 기업별 그들의 선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조직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관련된 권리들간의 조화는 차별 없이 똑같이 남자, 여자, 국내, 국외에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완성 요망.

4. 문화와 관련된 조항

문화는 보고서 상으로는 흔히 문화 시설-박물관, 극장, 도서관, 영화 제작 등등의 명확하게 한 국가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로 정의할 수 있다. 문화는 항상 매우 중요한 장치들을 통해 이해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질서 속에 존재하는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인간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받아들여지고, 채택하여 창조되어지는 자원들과 조화를 이룬다. 모든 문화는 가치와 신념의 상징적인 영역-관습과 제도의 사회적인 영역, 기술과 삶의 조건에 대한 지식-을 포함한다.

문화는 집단과 이를 구성하는 개인에게 그들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게 해 주고,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하며, 문화적 침입에 대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해서 연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준다. 다양한 문화는 집단 내에서 삶과 위치에 대한 귀속감을 심어준다. 이 경우에 문화는 MAI에 대해 저항하고 그 국가의 모든 계획을 반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

만일 문화를 바라보는 수단을 공유한다면, "세계 문화"나 "전세계적인"이란 관념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짜-전세계적이라는 관념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존중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복과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제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경을 넘다들며 시장을 중형무진 왕래하면서 필요와 입맛이 모두 똑같아 지는 것을 추구하는 투자자들을 신뢰하여 맡길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문화이다.

문화적 표현방식이 순전히 이익만을 위한 기업의 손아귀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는 공권과 시민들은 특히 경계해야 한다.

투자에 부과하는 세금의 일부는 소수자 문화로 이해되는 문화를 창조하고 보호하는 것을 보조하는데 배당될 수 있다

Jack Ralite과 그 지역의 친구들의 도움을 통해 완성.

5. 자본의 규제, 금융투기와 과세와 관련된 조항

민일 자본의 이동을 통제할 수 없다면 인간의 권리, 좀더 공정한 수입의 재분배, 남반구 국가들을 위한 도의적인 삶의 수준, 환경보호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것은 어렵거나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히 통제권을 벗어난 흐름들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구들이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은 1997년 말에 WTO에 의해서 설치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금융서비스에 대한 협약 [l'Accord sur Services Financiers(Financial Services Agreement)] 은 수천조 달러의 가치가 있는 금융거래와 WTO의 다자간 일반협정아래 있는 지역을 자유화시켰다.⁸⁵⁾

오늘날 민족 국가들-엄청난 소수의 경제적 이득에 대해 겁먹고,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거나 혹은 복종하는-은 만일 그들이 하고자 한다면, 시장에 대한 정치의 우위, 사적인 것에 대한 공공의 우위를 재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만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그것이 훨씬 가능한 이야기지만-경제적 이득에 대해서 시민들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민족국가들은 속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어도 아시아 혹은 러시아는 전조에 불과했던 사회 폭동과 금융 재난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산업 혹은 금융의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이 통일되고 투명한 적합한 기준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단들을 구비하는 것이 특히 시급하다.

과세

85. 1997년 12월 15일에 "WTO의 금융 서비스 교섭의 성공적인 결론에 관한 웹 사이트 (wto.org) 의 문서 참조. 정확한 문서는 그것이 그렇게 자유화됨을 보여준다. 은행의 세계적인 보유액은 40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며, 하룻동안의 외환거래는 1조 2천억 달러이다. 단기계약과 이윤, 화폐 그리고 주가 지표에 관한 옵션으로 10조 달러, OECD 국가들 안에 들어있는 보험료로 2조 달러.

MAI협상에서 몇몇 대표자들에 의해 제안된 문서에 따르면 "과도한 과세 체계는 국가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하는 불만인 투자자들에게는 지독한 강제수용과 유사할 수 있다." 불합리함이 극에 다다랐다. 외국 투자자들에게 남아있는 가능성: "프랑스에서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투자방식을 행하고 있는 프랑스 기업은 국제적인 조정실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동일한 권리조차 획득할 수 없다."⁸⁶⁾

MAI와 같은 투자 제도는 세계화를 통해서 효율성이 떨어진 것으로 여겨지는 국가 세금 제도를 더욱더 약화시킨다. OECD-다른 조사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자본의 움직임이 실질적으로 더 커졌다고 까지 평가를 하는-는 그것을 알고 있다. [자본의 움직임은 (다른 조사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다.]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가? 여기 OECD의 해답이 있다.

"고정 투자와 금융 투자가 동시에 교차하는 국제적인 흐름들과 함께 아마도 자본의 유입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일 필요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세금의 수입의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 노동자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훨씬 더 유동성이 적은 요소이기 때문이다."

자본의 유입에 부과하는 세금을 줄일 어떠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러한 부과는 노동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해답은 노동자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과세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 기업과 국제 자본의 세금회피를 차단하는데 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3가지 형태의 세금을 제안한다.⁸⁷⁾

- ◎돈을 교환하는데 부과하는 "토빈세"
- ◎외국인 직접투자에 부과하는 세금
- ◎이윤에 부과하는 일원적 세금

A. 토빈세

노벨상 수상자인 예일대 제임스 토빈교수에 의해서 1972년에 제안된 이 세금은 투기와 외환거래에서의 가격에 부과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세금은 국제적으로 동일해야만 성공한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환전에 대해서 부과된다.⁸⁸⁾ 어려움은 그것이 모든 국가에서 기준에 맞추어 동일하게 동시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86법정에서 변호사 알바라 누리에 의해 청구된 세계화에 대한 고찰(l'Observatoire de le mondialisation)에 관한 MAI에관해 출판되지 않은 노트 1998년 2월

87 다음의 제안들을 위해서 우리는 Washington D.C에 있는 American 대학 경제학과의Howard Wachtel 교수 작업에 도움을 빌린다. "세계 세금의 모자이크(The Mosaic of Global Taxes)" 1998년 2월

다. 그렇지 않으면 금융 기업은 세금천국-사람들이 똑같이 위험을 제거하고, 보다 멀리 볼 수 있는-속에서 그들의 조정영역을 이동하는 위험을 무릅 쓸 것이다. 외환 거래량의 중요성을 고려해본다면 그러한 세금은 아주 적은 양을 가지고 근본적인 수입을 낚는 것점이다. 어떠한 정부도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G-5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에서 일어나는 그 거래에 대해서 과세하지 못했다. 만일 그러한 과세가 G-5에 의해서 제정된다면 2배로 이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수입을 둘로 나누어 지출할 수 있다. 절반은 그 거래의 기원이 되는 국가에서 사회와 환경 기금으로, 또 절반은 남반구 국가에 재분배-교육, 보건, 그 지역 기업의 창설-를 위해서 쓰여질 수 있다.⁸⁹⁾

B. 외국의 직접 투자에 대한 과세

사회에 대한 과세는 전통적으로 이윤을 기반으로 하여 과세되었다. 그 체제는 세계화 이전에는 올바르게 기능했다. 오늘날 그것은 더 이상 기능하지 않는다. 이미 설명했듯이 자본은 특히 재화와 용역에 대한 이동에 대한 과세를 하는 높은 세율 지역을 피한다.

세계 모든 무역의 3분의 1은 오늘날 다국적 기업과 그 지사들 사이의 거래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본래의 의미의 시장과는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재화와 용역의 교환 가격은 각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왜곡되어 결정되기 때문이다. 사실은, 엄격한 세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가격을 올리고, 유연한 세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가격을 낮춤으로써 이윤을 얻을 수 있도록 가격을 조작할 수 있다.

미국 예산청은 이체비용때문에 120억에서 500억 달러에 이르는 수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회계국 [USGAO] 은 국제청의 장부를 조사한 후 236개의 미국 다국적 기업이 20억달러에 이르는 그들의 자금 거래를 재조정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 4분의 3을 이루는 미국에 공장을 세운 외국 나라들은 미국에 과세하지 않는다.⁹⁰⁾

상황이 유럽과 비슷해질 것 같다. 만일 그 기반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과세수입의 증가에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세계화와 자본의 움직임 때문에 잃어버렸던 과세의 기반을 다시 찾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투자에 과세할 필요가 있다. Watchel교수는 "고결한 순환"-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인

88 특히 국가간 거래는 "spot"으로 일컬어진다. 그것은 단기의 future계약에 대해서도 option에 대해서도 부과되지 않는다.

89 하루에 천 이백조 달러의 외환거래에 기반하여 계산을 해보면, 1%의 10분의 1과 가장가능한 250일을 고려하면, 300억달러(1800억 프랑)의 수입에 도달하게 되고, 0.005%로 계산하면 1500억달러(9000억 프랑)에 이른다. 그것은 그 운영자를 포기할 정도로 지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기금은 좋은 일보다는 나쁜 일을 훨씬 더 많이 함으로써 [세계은행의 경우 그것을 보여준다] 누군가 먹어 치워버리고 끝날 것이다.

90 제니스 실드, 기업조사와 세금 관찰을 위한 것 "투자에 대한 해외 과세" Foreign Policy Studies, Washington, D.C., Vol. 3 no. 3, January 1998

권에 기반하여 노동조건을 개선시키고 경제발전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국가를 보상해주는- 이라고 불릴 수 있는 정교한 도식을 제안했다.

세금은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OECD국가들에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과세는 국제노동사무국(BIT)에서 노동과 관련된 협약에 관련된 국가들을 분류함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기초적인 7개 협약 목록을 자세히 참조) 과세는 매우 억압적인 국가에서 낮은 월급쟁이와 "유순하고" 노조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을 이용하여 이윤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닐 것이다.

봉급쟁이는 고려에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발전의 수준은 매우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이다. 국제노동사무국 [더 자세히 참조: 아동 노동, 강제노역] ("가득찬 노동") 의 기초 협약을 고려하기만 한다. 남녀 사이의 권리의 평등과 종교, 국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등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그 기준을 존중하고 있고 점점 더 적은 잠재적 투자자들이 세금을 반대하고자 한다. (그 세금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술하지 않은 Watchel 교수와 같은 다른 도식을 제안한다)

10%의 부과의 양의 정가운데인(기준중 가장 적은 양을 존중해주는 그 안에서) 5%(가장 그것을 존중해 주는 한에서) 그리고 1에서 최하 5에 이르는 BIT의 분류라는 지침. 중국은 1996년에 IDE로 400억달러를 받았다. BIT등급 5로. 10%의 과세로 세금의 수입이 BIT 등급 5로 계수로 나누어지는 4십억 달러가 된다. 중국은 평형화 기금(예를 들어 BIT에 의해서 운영된)을 받았다. 발전 X라는 걸로 다른 국가들은 100억달러를 받았으나, BIT협약에 따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부어서 1단계로 분류되었다. 5%로 세금을 매김으로써, 1단계로 분할되면서 상향된 노동의 기준을 갖춘 국가로 전환하는데 완전히 쓰여진 생산품이 5억 달러이다.

그 제안은 예를 들어 4, 5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들에게는 1, 2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들에게 보상해 주기 위해서 많은 것을 잃도록 하는 벌칙을 주는 체제를 생각함으로써 정제될 수 있다. 그것이 "고결한 순환"을 다시 강화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세금은 세금이 매년 새롭게 부과될 수 있기 위해서(그 감축안에서 부과되는 양) 투자자의 유량(flux)뿐만 아니라 저장(stock)에도 적용된다.

C. 이윤에 관한 단일 세금

그것은 다국적 기업자본의 움직임을 왜곡하는 다른 수단과 관련이 있다. 그 세금은 특별히 자본의 이동현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다양한 지사들 안에서 계산서상] 이윤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평가할 수 있어야만 한다. Watchel은 미국에서 종합과세(tax unitaire)라고 불리는 것을 제안했다. 그것은 널리 알려지고 상대적으로 은폐하기 힘든 계정과목을 구성한다. (집합된 세계 이윤, 세계적인 수입, 주어진 정의 안에서 수입)

1. 세계적인 수입 안에서 주어진 정의 안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나눔으로써 수입의 기초에서 뽑아낸다. [세계적인 수입]

2. 그 정의 안에서 벌어들인 이윤의 일정 정도는 수입의 일정정도로 간주된다. 예: 회사는 10억달러를 이루는 연간 이윤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매상의 40%를 이룬다.

3. 그 세금은 미국에서 400달러를 이루고 과세는 바로 그 기반에 붙여진다.

4. 종합과세는 수많은 잇점을 보여준다. 자금이동의 문제는 노출되었다. 종합과세는 오늘날 모든 과세 정의에서 피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을 되찾을 수 있다. 그것은 "새로운 세금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윤에 대한 과세인 고전적인 과세를 운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남반구의 국가(그리고 북반구의 어떤지역)는 피난처의 수단으로서 세금면제로서 투자자들을 더 이상 끌어들이 필요 없다.

D. 환경세

에너지, 오염물질 방출, 자연자원의 이용에 부과하는 그 원리가 잘 알려진 환경세의 효용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언급하자.

"사람들이 적게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부과하라. 더 많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더 적게 부과하라"는 격언이 제일 중요한 길잡이이다. 그래서 노동과 소비(더 많이 평가되는)에 대해서는 적게 부과하고 투기와 오염(더 적게 평가되는)에 대해서는 많이 부과하라.

6. 밀수 경제와 암시장과 관련된 조항

정부가 다양한 거래를 만들어내는 "검은 돈"의 순환을 분명하게 촉진시키고 싶지 않다면 그들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 기업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온상을 이루는 기금의 투자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필요한 조치를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싸움의 수단은 존재하고 국가는 이를 마련해야만 한다. 유럽의 행정관의 권고와 제네바 협정의 다른 권고를 즉각적인 수단으로 부여잡는 것부터 시작하라.

◎ "정책적인 그리고 정당한 수단을 가지고 지나친 보호주의 폐지. 행정관이 도중에 조사에 유용한 정보를 찾고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공정한 유럽 상황의 실질적 조성"

◎ "국제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수요 외부에 있는 은행 비밀의 측도를 보장하는 협정 제정"

◎ "민주주의의 시각에서 실질적 힘의 간섭과 의존 없이 국제위원회와 정의 사이의 조사 결과의 직접적인 전달"⁹¹⁾

⁹¹⁾ 91년 유럽의 많은 집행위원회에 의해 서명된 제네바 협정.

마약, 테러리즘, 종파주의, 붕괴를 조장하는 돈의 순환을 저지할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

◎ 조세 천국에 대해서 정면 공격. 만일 G-7의 중앙은행이 그들 국가의 무역은행에게 역외조달의 기초가 되는 무역을 받아들일 수 있는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하지 않는다면 [버뮤다, 케이맨 섬, 비르게 섬, 지브롤터, 저지 등] 재활동과 돈 세탁이 더욱더 어려워 질 것이다.

◎ 동시에 실제로 작은 세금천국인 "깨끗한 지역"의 몰수.

◎ 효과적인 은행 관리를 위한 바젤 핵심 규칙의 면밀한 조사. [은행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바젤 핵심규칙] 국제 규제의 은행을 위한 기초, 법무부 혹은 조세청과의 조화를 거부하는 은행에 대한 설립허가 철회.

7. 남반구 국가와 관련된 조항

MAI는 OECD국가들 사이에 유일하게 다섯 개-라틴 아메리카에서 3개, 중앙 유럽에 2개-의 옵서버와 협상했다. 협상은 OECD국가의 회원국인 아닌 나라들에게도 서명할 수 있게 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항상 전자는 어떠한 조치도 수정할 수 없었다. 협상 바깥에 존재하는 국가에 대해서 경멸적인데. 받아들일 수도 수정할 수도 없는 것이 더 큰 이유였다.

남반구에 있는 사회운동과 함께 우리들의 협약에 의해서 우리들은 특권화된 협약-MAI와 외국투자에 대해서 국가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보존-이 항상 남반구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재분배하거나 혹은 평등한 전통 없이 부패한 국가는 너무나 자주 착취자로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 왔다.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는 투자는 중요하나 투자의 훨씬 중요한 목표는 국가를 위해서 이루어져 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재인식하는 것이다.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남반구에서 동료들이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깊게 하는 것을 듣고 있지만 들은 이전부터 이야기해왔다.

◎ 원칙에 따라서, 다른 이에 대해서 먼저 협상된 어떠한 협정도 "취하거나 남겨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국가들에게 제안될 수 없다.

◎ 남반구의 국가들은 특별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은 그들이 책임감을 더욱 더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지역사람들을 형성해내는데 열중해야 할 것이다.

◎ 남반구 국가는 투자자들에게 존재하는 양자 협정에 의해서 침해될 수 있다. 세계 투자 보고서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닌 UNCTAD는 남반구의 국가들에게 그들의 양자 협정을 다시 보고 실질적으로 다시 협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률과 협상이 제자리를 찾게 해주어야만 한다. 남반구 국가의 몇몇 정부는 국제적인 협상 속에서 노조 결성권, 노동 조건 혹은 환경보전에 관련된 규제들을 포함하는 모든 동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북반구의 정부의 일부의 "보전주의"의 자발성을 인용하면서 구조적 차원에서 일으킨다. 의문에 놓인 신디케이트 혹은 국

가 환경의 파수꾼의 관점은 거의 고려에 넣이지 않는다. 우리들은 북반구에서 남반구 국가의 신디케이트와 환경 파수꾼과 함께 공통의 원인을 만들어가는 깨끗한 우리들의 정부로부터 만들어진 정말로 보전적 조치를 승인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만일 우리가 정치를 바꾸도록 질책하면서 정부에 강제할 수 있다면, 반대로 세금의 고무 혹은 인권과 환경을 가장 잘 지켜나가는 국가를 보상하기 위한 다른 것들은 행할 수 있다. 다자간 협상의 수준으로 그 국가의 관료뿐 아니라 민중 대표들과 논의 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기술된 집합 세금은 1973-74년에 UN에 이루어졌던 새로운 국제정치질서의 세계를 이루어낼 원칙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남과 북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정의를 위해서 시행되어야만 한다.

결론

우리들은 투자가 행해지는 지역에서 정의롭게 적합한 원칙을 실행시킬 수 있는 기관이 부족함을 인식하고 있다. 국가간 연합 기구를 새로운 형태로 바꾸는 계획은 무수하다. 그러나 어떤 것도 실행되지 않고 있다. 특별히 건립된 기관은 점점 더 신 자유주의의 공격에 대해서 항복하고 있다. 어떠한 시민과 민중연합도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자본에 대한 시민의 통제를 허용하는 과정은 전무하다. 실상, 모든 것이 투자자에게 투자하도록 남겨져 있다.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법을 제정하는 것과 같은 가장 강력한 것들-경우에 따라서는 다국적 기업-을 남겨놓을 이유가 없다.

우리들은 다른 한편으로 수많은 기구들을 신뢰할 수 있고, 만일 투자를 존중해준다면 좀더 공정한 법들에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투자법을 인식할 수 있다. 우리들은 북반구에서 특별히 우리들의 국가에 기반을 두고 뻗어나가는 자본의 거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것을 할 책임을 느끼고 있다. 적합하고 효과적인 정보와 상담의 체제를 통해서, 시민들을 규합함을 통해서, 협상의 전개를 통해서. 의회는 정부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기여받기를 요구받으면서 정교적으로 관련된 모든 영역을 알고 운영을 해야만 한다.(때로는 다른 나라들 사이의 환경, 노동, 공중 위생)

우리들은 오늘날 너무 멀리 와 있다. 시민들의 커다란 책임감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싸움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들은 완벽한 자유주의는 완벽한 자유를 죽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엄청난 경제적인 능력에 맞부딪혀라. 자살의 정치로 이끌어가는 신자유주의에 너무나 자주 이끌어지는 정부에 맞부딪혀라. 우리들은 시민들이 모든 그들의 힘을 신자유주의라는 계획과 시장에 의해서 인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제안하려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그것들이 시민들과 민중들의 협약과 함께 투자와 복지에 대해서 기여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한다.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결책

저자: 노동권을 위한 캠페인 <clr@igc.apc.org>

날짜: 1999년 3월 16일

포럼: misc.activism.progressive

1999년의 지구적 지속가능한 발전의 해결책

[Bernie Sanders대표에 의해 의회에 곧 소개됨]

이 결과 미국의회에서 해결해야 한다.

1장: 전문

새로운 세계 경제가 지난 25년동안 출현하였다.

세계경제는 미국인과 인류에게 심대하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쳤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계경제를 계획하고 운영하는데 아무런 발언권이 없다

세계 경제의 현재 구조는 미국 독립선언과 국제 인권 선언에서 규정된 평등권과 자결권과 같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파괴하고 있다.

통제되지 않는 세계화는 지역과 지구적 환경의 유지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전세계적인 인류의 경제적인 안전과 보장을 위협할 정도의 위기에 들어섰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과 전세계의 민중들이 세계 경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개시함으로써 풀어야 한다.

2장: 의견

의회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규제되지 않은 경제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경험이 입증해 주고 있다.

휘발성

(a) 세계 금융의 탈규제화는 자본의 국제적 흐름에 대한 장벽을 제거해왔다. 현재 1조 5천

억달러 이상이 외국 외환 시장에서만 매일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양은 금융 불안정을 일으키고 있으며, 각 국가가 통제하기에는 너무 많은 규모이기 때문에 금융 안정을 되찾기 위한 개입을 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현상은 위험하고 파괴적인 금융 휘발성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밑바닥을 향한 경주

(b)세계화는 유동성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국가가 노동자를 해고하고 사회적 비용, 환경 비용을 감소시키도록 하는 파괴적인 경쟁을 부추긴다. 많은 국가가 그와 같은 작업을 수행한다면 결과는 파괴적인 "밑바닥을 향한 경주"가 될 것이다.

각 국가가 임금과 사회적 부담, 환경적 부담을 덜음으로써 보다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면, 보다 낮은 임금과 감소된 공공 지출은 보다 낮은 구매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것은 스태그네이션, 경기후퇴, 실업,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낳을 것이다.

빈곤

(c)25년간 진행된 세계화는 빈곤에 있어서 감소가 아닌 광범위한 증가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

i. 세계적으로, 실업자가 10억에 이른다.

ii. 1973년에 미국에서 실질 평균 임금은 시간당 9달러였다. 그런데, 25년이 지난 후 시간당 8달러가 되었다. 중산층 가족의 수입은 1989년에 비해 1996년에는 1,000달러가 줄어들었다. 전형적인 결혼한 가족은 1989년보다 1996년에는 연간 247시간 더 많이 일했으며 이는 6주 이상의 추가 노동에 해당한다.

불평등

(d)세계화는 국가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부의 집중과 빈곤의 증가를 극대화시켰다. 447명의 억만장자가 인류의 하층 절반 수입보다 더 많다. 미국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은 미국 인구의 하층 40%에 해당하는 부를 소유하고 있다.

세계에서 제일 부유한 3명의 부를 모두 모으면 48개-전세계 국가의 4분의 1-의 최빈국의 총 생산량보다 더 많다.

세계에서 부유한 225명-그중 60명이 미국인으로서 3110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은 전 세계 빈곤층 47%의 연간수입에 해당하는 1조달러가 넘는 부를 가지고 있다.

세계화의 압력은 주로 여성, 소수 인종, 토착민을 포함하여, 힘을 가지지 못하는 차별 받는 집단들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성은 수출 산업발전의 주요한 희생자였으며, 기본적 필요에 대한 공공 서비스와 공급에 있어서 축소의 주요대상이었다. 세계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민자와 소수 인종은 착취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인 세계화로 일어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희생양으로서 희생당했다. 토착민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은 파괴되었으며, 그들을 먹이로 삼는 초국적 기업과 정부에 의해서 경제적인 자원을 수탈당했다.

민주주의의 쇠퇴

(e)세계화는 민주적인 참여 과정을 통해 그들의 운명을 만들어나가는 개인과 민중의 힘을 감소시켰다.

i. 세계 100대 주요 경제중, 51개는 회사이지, 국가가 아니다. 세계화는 주로 지역, 주, 정부와 관련된 세계적인 회사의 힘을 증가시켰다. 발전, 완전 고용, 정부의 권한 혹은 여타의 국민경제적 목표는 다른 여타의 사적 권력까지 공장을 철수하겠다고 위협하는 증가한 자본의 힘에 의해 침식당하고 있다.

ii. 국제적으로 반트러스트, 소비자 보호, 그리고 일국적 수준에서 기업의 책임성의 수준을 제공하는 여타의 법률들에 국제적으로 상응하는 것이 거의 없다. 결과적으로 회사들은 공장을 철수할 것이라고 위협을 가함으로써 정부에 정책을 지시할 수 있다.

iii. 국가 권한은 WTO, NAFTA와 같은 무역협정과 국가, 주, 지역 정부의 경제에 대한 지배력을 제한하는 IMF,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적인 금융기구에 의해서 침식되어왔다. 이러한 기구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기구는 너무나도 자주 인권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

2. 세계경제는 미국과 세계 민중의 복지를 위협할 정도의 위기에 들어서고 있다.

a) 클린턴 대통령은 현재의 세계 경제 위기를 50년만에 최악이라고 칭하면서 이는 "세계 공동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였다.

b) 세계 경제 성장은 30년만에 최하점이다.

c) 세계화의 모범으로 불리던 국가들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남한의 경제는 45%가량 위축되었고, 태국의 경제는 50%정도 위축되었다. 인도네시아 경제는 80% 가량 위축되었으며 일인당 총생산은 3500달러에서 750달러로 떨어졌다.

d) 아시아에서 시작한 경제위기는 전세계로 확장되었다. 지구적으로 확장된 위기는 미국과 전세계의 무역, 고용, 자본시장, 농업, 기타 삶의 여러 측면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3.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하는 것이 미국과 세계 민중에게 공통으로 이익이 된다.

3장: 정책 목적

여기에 서술된 것들이 미국의 정책으로 선언되어야 한다.

1.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행시키기 위한 세계 경제 재구조화

- a) 지역 및 세계적 차원까지의 민주주의
- b) 모든 민중을 위한 인권
- c) 전 세계적인 환경 지속가능성
- d) 여성, 이민자, 소수 인종, 토착민들을 포함한 억압받고 착취받는 인류의 경제적인 진보

2. 지역적이고 세계적 차원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민중의 힘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민주정부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다차원의 세계경제 구축

a)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UN헌장에서는, 정부가 시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는 노동, 사회, 환경, 경제 그리고 문화적 권리를 포함한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b) 지구적 경제 속에서 초국적 기업과 국제 기구는 지역 및 민족국가가 민중들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그 작업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때때로 필요하다.

c) 가능한 범위에서, 경제적인 정책 결정은 보충적인 원칙-이미 결정된 실제 행동의 정도까지 가능한 한 근접하게 그 결정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에 따라야 한다.

3. 금융 휘발성과 용해의 위협을 감소시킴

a) 국제적 금융 투기("hot money")가 일으키는 불안정화 영향의 감소와 자국의 화폐 자율성을 확보하는 자본 통제력의 증가.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 i. 자본 유입과 유출에 대한 국내적 통제력
- ii. 단기 거래량, 보유고, 국가 자율성을 감소시키는 외환 거래에 대한 과세(일반적으로 노벨상을 딴 경제학자 토빈의 이름을 따 토빈세라 불리는데)와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 보고의 제공
- iii. 외환 거래율과 거래량에 대한 다른 형태의 규제

b) 경쟁적 평가 절하를 앞지르도록 함: 국가가 급격한 평가절하와 수출에 있어서 과도한 증가 없이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는 것을 도움

c) 공급을 전 세계적 수요에 충족할 수 있게 함: 세계 경제의 중요한 문제는 불충분한 경제적 수요이다. 이것은 전 세계적 불황을 가지고서 위협했다. 전 세계적 적절한 수요의 유지는

모든 경제가 성장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적합한 세계적 수요를 보장하기 위해서 함께 일하는 주요 세계 경제력의 협력을 요구한다. 수요를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은 주로 세계적인 빈곤과 세계 환경에 투자할 자원을 넓힘으로써 평등과 생존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d) 투기자들이 그들의 손해를 보충할 수 있게 함: 국제적 기업구조는 높은 위험을 지닌 투기의 결과물들로부터 큰 은행과 투자자들을 고립시켰다. 그것은 보다 투기적인 모험을 부추긴다(도덕적 해이) 그 결과 국제적 휘발성을 심화시켰다. 문제가 발생한 경제에 도움을 줄 때, 그것은 민중에게 이익이어야지, 민중들의 최초로 곤란에 빠뜨리도록 이끈 국제 투자자들에게 이익이 가서는 안 된다.

4. 불평등, 빈곤, 그리고 밑바닥을 향한 질주와 맞서 싸우기

a) 환경을 장기간의 자원으로 향상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척시킴으로써 세계 환경을 보호

b) 지역적이고 세계적인 정책 수단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진척시키기 위한 지역 정책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i. 생존할 가능케 하는 임금 보장
- ii. 중소 현지 사업과 농장이 신용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iii. 가난한 자에 대해서 짐을 덜어줄 진취적인 세금정책 추구.
- iv. 투기적 이윤만을 뽑아내는 단기적 외국 투자보다는 장기 투자의 고양.
- v. 주요 보건, 초등 교육, 이외의 민중의 삶을 고양시킬 수 있는 기타 사회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고 장기적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의 제공
- vi. 지역 공동체에서 민중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자원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의 부여. 국제적인 협약은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경제적인 자립을 추구하는 공동체의 권리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국내적 국제적 정책은 지역적으로 통제된 발전으로 자원을 돌려야 한다.

c) 외채 탕감: 최빈국 외채는 탕감되어야 하며 타국은 외채상환을 종용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d) 세계 빈곤을 줄이기 위한 부국과 빈국 사이의 협력 추구: 부국과 빈국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적 격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 보편적 특징인양 치부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

e) 풀뿌리 민중들이 강하고 독립적인 조합을 건설하도록 고양시키고 경제적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참여와 경제적 이익에 적합한 분배를 다른 조직이 하도록 진척시킴

5.민주주의의 고양

a)민주주의와 인권을 지지하는 경제 정책: 인도주의적 도움이 필요에 있어서 도움이 되어 지는 반면, 금융적 보조는 민주화와 대중참여를 고양시키는 수단으로서 제공되어야지, 인권을 부정하는 영속적인 지배체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b)IMF와 세계은행, 다른 국제 금융 기구 그리고 G-7/8의 민주화: 부국들이 국제 금융기구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하고 G-7/8을 통해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등 세계 경제에 대한 결정권을 독점하는 것을 받아들이 수 없다. 국제금융기구에서의 투표는 세계 모든 국민들이 동등하게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국제 경제 정책 계획은 G-7/8과 같은 부유한 이들의 모임에서 북반구/남반구의 새로운 형태의 모임에서 결정해야 한다.

c)국제적인 경제 기구의 투명화와 공개: 세계 은행, IMF 그리고 WTO와 같은 기구의 진행 과정, 결정, 프로그램은 대중적인 감사가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d)국제 경제정책에 관심 있는 이들이 계획에 참여: 강대국 정부와 기업 경영진 사이의 밀실 협약 대신에, 국제 경제 협약과 대부에 관한 결정은 노조와 환경단체, 여성 조직, 개발기구 및 시민사회의 다양한 영역들의 참여가 요청되어야만 한다.

e)각 단계에서 정부는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그와 같은 계획의 실행에 있어서 국제적인 지원을 요구해야 한다.

f)정치적 체제와 경제 과두제에 의한 매스컴의 지배를 축소시키고, 스스로를 조직할 수 있는 민중의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서 "정실 자본주의(crony capitalism)"를 종식시키는 것

4장: 정책 요구

I. 국내 대화의 시작

1.세계 경제의 미래와 관련한 민주주의의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 위원회(U. S. Commission on the Global Economy)가 설립되었다.

a)세계 경제에 대한 미국 위원회의 목적은 세계 경제의 미래에 관한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b)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것이다.

i.미국 노동자와 산업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세계화의 영향력을 조사하는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공청회는 시민 사회-노동자, 여성, 소수자, 환경, 농부, 그리고 주변산업으로부터의 대표자를 포함하는-의 완벽한 참여를 포함한다. 이의 결과는 광범위하게 공유되어야 하고 공개적인 논평할 수 있어야 한다.

ii.논의에 관련한 대중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주요 미국도시에서 소모임을 개최할 수 있어야 한다.

iii.다른 국가와 국제 연합에 의해 건설된 유사 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iv.이러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난 후 1년 안에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소견과 권고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

II. 지구적인 대화의 시작

1.미국은 세계 경제에 대한 UN 위원회의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a)세계 경제에 대한 UN위원회의 목적은 세계 경제의 미래에 대한 세계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b)전세계 민중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부여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국제연합의 후원 아래에서 기능해야 한다.

c)위원회는 남북간 대화(North-South Dialogue)를 재개를 추구하고, 공정함에 기반하여 세계 경제를 새롭게 재편하고자 한다.

d)위원회는 시민 사회의 참여에 대한 자금과 지원을 포함하여, UN회의에서 시민사회와 NGO의 대표들을 포함시킨 지난 10년에 걸쳐 발전시킨 기술을 사용하고 확장할 것이다.

e)유사한 국가 위원회는 세계 경제의 미래에 관하여 광범위한 가능한 대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계 위원회와 함께 작업할 것이다.

2. 세계 경제에 대한 UN위원회는 세계 시민들에게 각 단계에 있어서 경제 기구와 정책들의 결과, 영향, 실패를 조사하는데 필요 있는 정보를 제공할 세계 경제 진상 위원회(Global Economy Truth Commission)는 건설할 것이다. 진상 위원회의 조사에는 국제 기금의 사용과 국제 금융 당국의 힘의 오용에 대해서 다른 당국을 조사하고, 공표하고, 참고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할 것이다.

III. 세계적 지속 가능한 발전 협약

1.세계 경제에 대한 국제 연합 위원회는 브레튼 우즈와 같은 일련의 국제 위원회가 세계 경제를 위해서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언급은 국가, 은행가, 산업의 대표뿐만 아니라 각 나라로부터 온 시민 단체의 대표도 똑같은 수를 포함하여야 한다. 협상은 열린, 총괄적인 그리고 민주적인 과정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2. 이러한 논의는 세계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 협약을 위해서 권고를 해내고, 협상을 시작

해야 한다. 이 협상에서 미국의 목적은 이 결의서에서 발표된 원칙, 법칙, 정책을 통합하고, 위에서 기술한 세계적 논의 속에서 수정을 가함으로써 그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에 기술된 기구들을 건설할 것이다.

IV. 세계적 지속 가능한 발전 금융 전략

1. 미국은 세계적 금융체제-공동체, 지역 그리고 국가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보다 어렵게 만들어버리는-의 다른 측면에 반대할 전략을 발전시키고 실행시키고자 UN의 다른 구성원과 함께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

2. 이러한 전략의 목적은 국제적 금융 체제-세계적인 경기후퇴를 피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완전 고용을 보장하고, 부와 빈곤의 양극화를 역전시키고, 그들의 경제적 자원을 동원하고 협력하는 모든 단계에서의 정치적 노력을 보충하는-를 재구성해내는 것이다.

3.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미국은 다른 국가와 함께 노력할 것이다.

a) 수출위주의 성장 이윤을 통해 국내의 빈곤화가 아닌 국내 경제의 성장에 기반한 경제 정책의 추구

b) G-7/8 국가들이 국내적인 수요를 촉진시키고 세계적인 디플레이션을 막는 경제정책과의 조화

c) 국가가 경쟁적인 가치하락 없이 환율 적용에 대한 원조

d) 세계 경제 특히 가난한 국가들을 유동성 압박(liquidity squeeze)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 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s)체제의 확장과 같은 세계적인 유동성을 보장하는 수단의 발전

e) 브레튼 우즈 협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보다 안정적인 환율로의 회귀

f) 필요한 수준에서 자본 통제를 받아들임으로써 단기간 자본의 불안정한 흐름을 감소

g) 국내적 국제적 규제 당국에 의한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에 기준 마련과 그 규제.

h) 금융자원의 투기에서 유용하고,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의 방향 전환: 중소 기업과, 농부들 그리고 공동체 발전을 목표로 하는 투자를 포함.

i) 완전고용과 생활수준 향상에 적합한 세계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을 추구.

4. 미국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모든 외환 거래에 대한 세제를 구축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어 국내에서도 외환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체제를 형성해야 한다.

a) 불안정한 국가간 단기 금융 흐름의 양을 감소

b) 국내 통화에 대한 국내 화폐 자율성의 회복

c) 가난한 공동체와 국가에서 장기간의 친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투자 기금을 마련

5. 미국은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1개 이상의 국제 공공 투자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이 기금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인간과 환경적 필요를 충족시키고 기금을 지속가능한 장기간의 투자로 돌림으로써 적절한 세계적 수요를 보장하는 것

b) 금융활동의 확장과 수축을 조절함으로써 세계 경제 주기에 맞서기 위한 노력

6.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여 미국은 국가 중앙은행에 의해 적절치 않게 현재 실행되고 있는 통화 규제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모든 금융회사의 국제적 결합 대차 대조표에 관한 국제적으로 조정된 최소 보유량 체제.

b) 세계 성장률에 있어서 주기적인 다양성을 막기 위한 보유량의 유용화

c) 보충적으로 국내 세금-통화 정책과 국제 환율 협약을 통해, 통화 환율 주기를 단축시키기 위한 동등한 노력

V. 외채 탕감

1. 미국은 G-7, 상업 은행, 국제 통화 기금, 세계 은행, 지역 발전 은행, 다른 국제적 금융 기구들과 함께 2000년 말까지 최빈곤국의 외채를 탕감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모든 외채 탕감의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국가가 지속 가능한 국내 발전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a) 미국은 미국에 외채를 부담하고 있는 최빈곤국의 모든 외채를 탕감시켜야 할 것이다.

b) 미국은 IMF, 세계 은행, 다른 국제 금융 기관이 최빈곤국에 대한 외채를 완벽히 탕감시켜줄 것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외채 경감에 참여하도록 그곳의 대표들을 이끌어야 할 것이다. 외채 경감에 대한 재원은 이전 IMF의 재원, 특별 인출 당국(SDA), 향상된 구조조정 기관 [Enhanced Structural Adjustment Facility(ESAF)], 준비예금(Reserved Account), 보다 낮은 담보 요구, 금을 포함할 것이다. IFI(국제 금융 기구)는 많은 외채를 부담한 채무국에 대해서 근본적인 외채 경감을 지원하는데 미화 10억달러의 자산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c) 외채 탕감은 구조 조정이나 유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집착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d) 외채 경감을 받은 국가는 기초 복지 사업을 발전시키는데 시민 사회로부터 적절한 투입

량과 함께 그와 같은 경감으로부터 얻은 이득의 적어도 20%를 기초 사회 복지 사업에 할당함으로써 인류 발전에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 모든 빈곤국은 외국대부에 대해 매년 수출로 인한 수입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불하도록 강제되어서는 안 된다.

f) 외채 경감에 대해서 받은 어떠한 기금도 군사 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2. 미국은 많은 외채를 진 국가에 대해서 파산(insolvency) 체제를 건설하는데 다른 나라와 협력해야 한다.

a) 파산체제는 미국 파산법 9조의 시정의 파산상태 조항과 같이 정부의 다른 파산과정의 경험에서 끌어내야 할 것이다.

b) 채권자와 채무자들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할 1인 이상의 동수의 사람을 지명할 것이다. 그들이 함께 중재 패널을 구성할 것이다.

c) 중재 패널은 빈곤-채무국 경제 미래에 대해서 인간존엄성의 최소한을 수호하기 위한 사회적안전을 위한 필요비용을 고려하면서 채무국의 지불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이다.

d) 중재 결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에 참석할 권리를 가진다.

e) 중재 패널이 국가가 파산상태이며 외채를 지불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정할 때, 채무자의 지불능력에 기반한 외채로 재구성될 것이며 정부, IFI 그리고 개인 채권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그러한 재구성일 것이다.

IV. 국제 금융 기관의 개혁

미국 의회는 세계 은행, 다른 국제 금융 기구(IFIs)들의 미국 지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제시했다.

1. 노동 조건

a) IFI는 ILO의 관련 협약에서 열거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결사의 자유권, 조직권과 단체 협약권, 차별로부터의 자유, 모든 형태의 강제 노역의 금지, 파업권, 어린이 고용에 대한 최소연령을 포함하여 국가간 발전 수준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최소한의 노동 기준, 최소임금을 고려하여 수용 가능한 노동조건, 노동시간, 모든 프로그램에서 직업상의 안전과 건강을 포함하는-에 합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하치는 모든 대부에 있어서 승인하고 갱신할 때의 조건이 될 것이다.

b) IFI 사절단은 노동문제 협상을 이끄는 데 ILO로부터의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

c) 현지 노동조합이 이 협상에 참여해야 한다.

d) 이러한 논의의 결과는 모든 IFI 문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2. 환경 조건

a) IFI는 먼저 조사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정을 마련해야 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각 대부 협약이 미칠 영향들을 계획에 넣는 정책 형태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b) IFI는 기술적 도움을 받아 그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환경고려기준에 대해서 전문적인 자연 자원 환경주의자들을 고용해야 한다.

c) 환경 규제는 어떤 IFI 프로그램에서도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

d) 대부 프로그램은 환경세 정책이 부정적인 시장 외부효과와 다른 시장 잘못을 고침으로써 환경을 보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e) 모든 IFI 대부는 환경법을 강화시키고 환경적인 경영과 강제를 위한 정부 능력을 빌려주는 것을 늘려나갈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f) 어떠한 IFI 프로젝트 또는 정책도 다자간 환경 협약의 목적이나 정책에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

g)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해야 한다.

i. 대안적/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1999년에 수요측면 경영, 에너지 효율성 프로그램에 모든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20%를 투자해야 한다. 모든 에너지 포트폴리오에서 이 프로그램의 지분은 그 이후에 매년 10%씩 [X퍼센트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ii. 매년 10%씩 모든 포트폴리오에서 탄소 방출을 [X퍼센트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야 한다.

iii. 세계 20억의 가난한 국가의 에너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행동계획을 발전시키고 시행해야 한다.

iv. 교통 포트폴리오를 도로와 고속도로 건설에서 수요 경영, 안전한 도로, 철도, 공공 교통수단 그리고 모터가 없는 교통 수단 이용자들, 특히 사회의 가장 가난한 층에 이득이 되는 계획 쪽으로 바꾸어야 한다.

v. 농부 참여와, 환경 교육, 농약과 다른 화학 비료의 사용을 줄이는 훈련을 강조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vi. 정부가 지속 가능한 농업과 지역 그리고 국내 농산물 안전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정책 형성을 지원해야 한다.

vii. 산림 보호, 보전, 산림화는 임업부분에 대한 보조의 가장 주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viii. 목재에 대한 대체에너지와 목재 사용에 있어 보다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ix. 수요 측면 경영과 용수(用水) 효율성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h)세계 은행은 지원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i.미개척 지역, 주요 열대, 온대, 한대 산림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ii.산림 관리 위원회와 같은 공인된 국제 증명기관에 의한 증명되지 않은 벌채나 산림 계획

iii.UN이 지정한 국립공원, 보호 구역, 자연 보호/야생 지역, 국립공원 혹은 국립 산 기타 지정된 자연 지역 목록에 올라있는 지역에 대한 계획이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계획

iv.500명이 상을 강제로 이주시키는 계획

v.댐에 대한 세계 위원회의 곧 작성될 최종 보고서의 권고사항에 합치되지 않는 대규모 댐 계획

vi.오존층을 파괴시키는 자원의 가공 혹은 부식되지 않는 유기체 쓰레기 혹은 위험한 농약의 사용과 관련된 계획

i)IMF의 협약문은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강제하고 그것을 고수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하여

i.환경을 고려하는 IMF체제 마련

ii.각각의 대부 협약에 환경 영향 평가 삽입

iii.최소한도로 채무국가에 현재 존재하는 환경규제를 최소한도로 유지하고 강제할 것에 대한 요구

iv.GDP의 1퍼센트 정도인 환경 지출을 어떠한 기금 프로그램에서도 감소시키지 않을 것에 대한 요구

3.사회적 조건

a)대부 정책은 중소기업의 현지 소유의 기업 농장에 대한 대부 비율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b)IFI 경제 개혁 프로그램은 채무국 정부 측에 있어 주요한 의료, 기초 교육 다른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의 영역에서의 개인에 대한 공공지출을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c)IFI는 어떠한 대부 프로그램에서도 기본적 보건, 교육서비스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d)IFI는 여성·아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책들의 영향과 같이 공공 의료, 빈곤에 대해서 각 대부계획이 미칠 영향을 계획하고 먼저 조사하여 정책 형성에 고려하도록 체계적인 과

정을 마련해야 한다.

4.민주주의와 인권

a)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IFI에 부여함과 동시에 인권 침해 사례를 적발해내는 IFI의 독립적인 조사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b)모든 IFI프로그램과 정책은 IFI기금을 받는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성장과 유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그와 같은 정책은 시민 사회의 협의에 기반해야 한다. 인도주의적 원조에 한해서만 보다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대량학살등을 자행한 전범 국들은 IFI자금을 받을 수 없다.

5.IFI 관리

a)IFI는 세계 경제 진상조사위원회에 의한 감사서와 완벽한 보고서에 관한 과거기록들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b)IFI는 모든 평가서와 감사 문서, 임시 위원회와 발전 위원회 문서, 원조 국가들 보고서, 기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다른 문서들을 공공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같은 IFI의 문서공개는 IFI의 정기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c)모든 IFI는 제한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정보 공개 추정에 기반한 대중적인 정보 공개 정책을 채택해야만 한다. 정책 수립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보공개 거부 시에는 공정한 조사가 수반되어야 한다.

d)IMF협약의 조항들은 세계 환경 기관과 같은 관리 모델에서 착상을 얻은 관리 체제로서 그들의 숫자 비율에 맞추어 세계 민중들의 보다 민주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되어야만 한다.

6.참여

a)노동조합, 환경단체, 여성 기구, 발전 기구, 다른 주요한 시민 사회 영역에서처럼 모든 정부 부서에서 대중의 참여는 모든 IFI정책과 각각의 채무국 협상 프로그램에서 구조적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b)IFI의 공개적 대화를 통한 결정사항은 협의 문서, 부처 최종 분석, 국가 보고서의 최종 문서에 반영되어야만 한다.

c)IFI는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시민들이 이끄는 책임 있는 체제-그 프로젝트나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그것의 정책과 과정 이후의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IFI를 유지하는 수단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제와 과정은 세계 은행

조사 패널보다 엄격해야 할 것이다.

7. IMF가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일

a) IMF는 2년안에 1971년 이후로 만들어지고 확장된 프로그램과 활동들을 끝내고 중지해야 한다. 그것은 아래에 한정되지는 않으나 이를 포함한다.

- i. 구조 조정 기관
- ii. 향상된 구조 조정 기관
- iii. 구조 조정 프로그램
- iv. 소위 “선량한 통치(good governance)” 정책의 부과
- v. 단기간 해외 거래 불균형에 대한 IMF 고유 권한 이상의 다른 목적을 위한 대부
- vi. 은행과 개인적 대부(貸付)자에 의한 기업구제
- vii. 국가 경제 정책에 대한 충고, 명령, 요구

b) IMF는 그 회원의 “고용과 실제 수입의 높은 증가, 유지 그리고 생산 자원의 발전에... 기여하는”이라는 협약 조항에 표현한 것처럼 기금 명령에 맞지 않는 경제 정책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서 대부를 하는 환경조성을 중지해야 한다.

c) IMF는 기금 운영 권한 외부에 존재하는 금융, 노동시장 자유화 그 밖의 다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부를 하는 환경 조성을 그만두어야 한다.

d) IMF는 회원국가의 자본 자유화(“정규가 아닌 MAI”)에 관련하여 새로운 권한을 IMF에 게 부여할 수 있도록 협약 조항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을 그만두어야 한다.

VII. 거대한 기업 권력에 대한 저지

세계적인 기업에 대해서 공공 통제력과 시민들의 지배력을 행사하는데 자치법, 주법, 국법 회피 능력 저하를 촉진하는 것

1. 미국은 다른 국가와 초국적 기업에 대한 행동 규약(Code of Conduct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의 작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그 규약은 아래와 같은 목표를 위해서 일국을 넘어서 활동하는 모든 기업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a) 각 경우에 대해서 토지, 물 그리고 대기에 대한 유독 물질 방출을 공개하고 부주의한 유독 물질 처리를 공개.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유독 물질 목록은 최소한 미국에 있는 유독 물질 방출 조사국(Toxic Release Inventory)의 의해 언급된 물질을 포함해야 한다.

- b) 모든 완전-또는 부분-소유 기관과 모든 청부업자, 하청업자의 이름과 주소의 공개.
- c)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위험물의 공개.
- d) 1974년 무역 협정과 국제 노동 기구 협약에서 정의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자의 권리의 준수
- e) 현재 오염물 방출에 대한 세계 은행기준과 다른 환경 실행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 준수
- f) 공장 가동 중단시 사전 고지 및 명확한 임금 지불
- g) 조합 건설 노력을 보호하는 중립 협정의 승인.
- h) 지분소유자 이외에 제삼자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고용 실행, 노동자의 건강, 세금 지급 그리고 정부보조금의 수령-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이윤/손실, 경영자, 환경 의존도와 같은 금융 정보의 공개
- i) 투자 목적의 보고.
- j) 노동자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회사에 요구.
- k) 적어도 자국에서 요구하는 사회 기준, 환경 기준과 동일한 기준 유지.

2. 허가 제제 기제는 이러한 행동규약을 강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강제 체제는 정부와 시민들이 회사에 의해서 인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을 촉발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체제는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정부는 이러한 행동규약을 강제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무역과 다른 보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그와 같은 행동규약을 실행을 보류하면서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는 즉시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해외 운영에 대해서 미국 혹은 그 현지 국가의 보다 강한 것을 요구받아야만 한다.

- a) 유독 물질의 사용, 방출, 부주의한 폐기를 공개
- b) 완전-또는 부분-소유한 기관과 청부업자, 하청업자의 이름과 주소의 공개
- c) 국제적으로 인정된 핵심 노동 권리

5. 미국법은 미국내에서 운영되는 합자회사가 광범위하게 유발하는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고 미국 법정에서 구제를 위한 행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VIII. 국제 무역 협정의 개정

1. 이 규약이 통과된 지 6개월 이내에, 대통령은 WTO, NAFTA, 양자간 투자 협정, 다른 국제 무역을 규제하는 협약을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재협상하는 과정을 시작해

야 할 것이다.

a)그들 자신을 위해서 극대화된 목표보다는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들로서 무역과 투자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

b)평가와 수정적 조치를 위한 과정으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목표와 시간표를 각 협약에 써넣어야 한다.

c)경쟁력 강화의 요소인 노동, 환경권과 사회보호를 제거해야 한다.

d)자원 고갈, 유독 쓰레기 생산, 모든 쓰레기 그리고 최종생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비용을 포함시켜 산업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진정한 장기 비용을 시장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2.협상 목표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환경, 노동, 차별금지, 인권에 관한 UN과 ILO의 주요 협약을 계약 당사자에게 인식시키고 강제시킬 수 있는 조항

b)고귀한 노동, 건강 사회, 깨끗한 환경을 위한 최소 보장기준

c)국제적으로 보장된 최소 기준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지역, 지방, 국가 정부의 권리

d)고용률을 높이는 것, 목표 인류에게 고용기회를 증진시키는 것, 특정 산업에서 임금을 올려주는 것, 신성한 노동, 건강한 사회를 포함하여 지방 경제 발전을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국가와 지역의 권리,

e)발전을 가속화시키고 세계적인 불평등에 맞서는 수단으로서 저개발국에 대한 우선적 시장 접근권

f)가난한 국가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안정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물가 안정 협약

g)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든 형태의 기술적 지식에 대한 빠르고 값싼 접근

h)일정 영역에서 공공소유 또는 주 소유를 요구하는 법적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 일정 영역에서는 국가 소유를 배제하고 일정 영역의 소유에 국가가 참여할 수 있게 함

i)지역 투자와 우선 그 지역 출신자를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지역, 지방, 국가 경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요구의 수용

j)투자가 최소기간 그 장소에서 머무를 수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반(反)투기적 조항의 수용

k)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천연 자원의 개발을 위한 지역적 허가의 요구

l)모든 무역과정의 완전한 공개

m)재교육과 노동/사회 보조와 같은 사회적인 결과물뿐만 아니라 인접국가 환경 오염, 증가하는 교통수단과 같은 무역의 환경적인 결과물들에 대해서 보상하기 위해 무역 흐름의 증가에 대해서도 과세를 할 수 있는 기금체제

3.이 규약이 통과된 이후 1년 이내에 그리고 매년 당국은 위의 1장, 2장에서 서술한 것이 우선적인 협상을 반영하기 위해서 위에서 열거한 협약을 재협상하는데 있어서의 과정들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만 한다. 만일 언제라도, 의회의 양원이 그 보고서에서 받은 6개월 이내에 미국이 당사자가 된 각 무역협정에 대한 보고서에서의 세세한 과정들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하는 결의서를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무역협정에 포함된 철회기제를 발동함으로써 의회가 만족을 표시하지 않은 각 무역협정에 대해서는 당국은 6개월이라는 기간말에는 철회해야만 한다.

4.여기에서 의회는 무역 협정 당사국의 모든 인가를 종결짓는다. 의회가 협상당국의 새로운 인가와 협상 목표를 통과시킨 그 시점부터 미국은 새로운 무역과 투자 협정에 관한 협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